

2025년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상사법제의 최근 동향과 지향점

-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13: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
-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후원 대신경제연구소, 법무법인(유) 세종, 한국투자증권

일 정

▶ 사회: 남궁주현 교수(총무이사, 성균관대학교)

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식

- ▶ 개회사: 정준우 교수(인하대학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 감사패: 안강현 교수(연세대학교, 한국상사법학회 명예회장)
- ▶ 사진 촬영

학술대회

▶ 학술사회: 임철현 교수(연구이사, 전남대학교)

14:00~14:50 [제1세션]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 사회: 안강현 교수(연세대학교)

- ▶ 발표: 권용수 교수(건국대학교)
- ▶ 토론: 황남석 교수(경희대학교), 김신영 교수(전남대학교)

14:50~15:40 [제2세션]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사회: 심인숙 교수(중앙대학교)

- ▶ 발표: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 ▶ 토론: 안상희 이사(대신경제연구소), 김유성 교수(연세대학교)

15:40~16:00 Coffee Break

16:00~16:50 [제3세션]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

- 상사법원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 사회: 유진희 교수(고려대학교)

- ▶ 발표: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 토론: 주강원 교수(홍익대학교), 김유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

16:50~17:40 [제4세션]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편 우선, 개별행위 대응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

▶ 사회: 권중호 교수(건국대학교)

- ▶ 발표: 유명국 교수(한신대학교)
- ▶ 토론: 박준영 교수(경상대학교), 박미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7:40~18:00 폐회식

18:00 만찬

목 차

[제1세션]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권 용 수	1
▶ 토론	황 남 석	21
▶ 토론	김 신 영	23
[제2세션]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이 정 수	29
▶ 토론	안 상 희	65
▶ 토론	김 유 성	67
[제3세션]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 - 상사법원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김 효 정	71
▶ 토론	주 강 원	99
▶ 토론	김 유 돈	101
[제4세션]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편 우선, 개별행위 대응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	유 영 국	105
▶ 토론	박 준 영	119
▶ 토론	박 미 영	123

제 1 세 셴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사회: 안 강 현

발표: 권 용 수

토론: 황 남 석 / 김 신 영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권용수*

- I. 들어가며
- II.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 III.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과 의의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제
- IV. 마치며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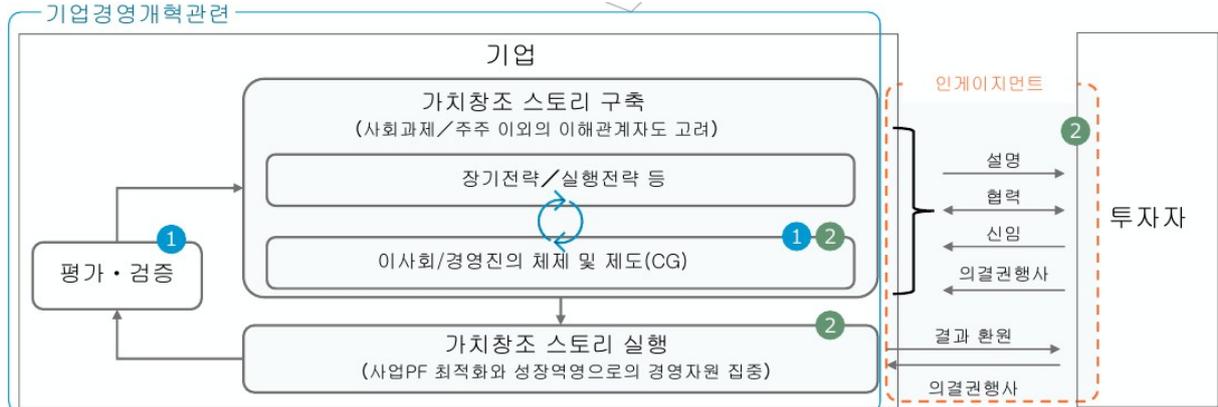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구체화가 있었다. 그 때문인지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해당 상법 개정안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도 있었다. 상장회사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다.

기업이 제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①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도 고려하면서 가치 창조 전략을 구축하고, ② 주주·투자자와의 대화를 토대로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하면서 그들의 이해와 신임을 얻은 다음 ③ 해당 전략을 적기에 실행하고 ④ 그 결과를 평가·검증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¹⁾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전자주주총회는 상기 ②와 관련해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전자주주총회는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실질화·효율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창조 전략 구축·실행을 주주 등이 좀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태계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1) 권용수, “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과 우리나라의 과제”, 「ISSUE PAPER」 Vol.1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5, 3쪽.

[그림 1] 기업의 경영 개혁을 뒷받침하는 체제²⁾



기업 가치 제고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건설적인 목적을 지닌 대화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외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유구조를 갖춘 상장회사가 존재하는 현실로 인한 경제적 동기 부족을 생각하면,³⁾ 기업과 주주 등이 건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시로 대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업과 주주의 대화에 관한 논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경영진과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주주총회의 실질화·효율화를 통해 기업과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⁴⁾ 이러한 가운데 전자주주총회의 활용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⁵⁾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일정 기간·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현실⁶⁾ 속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 활성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생각하면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조금은 급하게 진행된 면도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구체화에 매몰된 면도 있다. 관련해서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기업과 주주의 대화 실질화·효율화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본 논문은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평가한 후 추가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권용수, 위의 자료, 3쪽.

3)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한국재산법학회, 2020), 124~125쪽.

4)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던 새도우 보팅 제도의 폐지도 한몫하였다고 생각된다. 새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기업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권용수,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그에 따른 실무상 과제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18), 274쪽.

5) 전자주주총회 논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김신영,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21), 35쪽.

6) 박은영, “온라인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법학』 제31권 제3집(한양법학회, 2020), 200쪽; 권용수, 앞의 논문, 275쪽 이하.

II.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⁷⁾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된 듯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부정하던 근거의 설득력은 약해진 듯하다.⁸⁾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까? 전자주주총회는 현행 법상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만으로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구성 등 기업 고유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회사나 주주 등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누가 어떤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실무적·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이런 면, 즉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는 면⁹⁾에서 필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주권의 보호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1. 이사회 결의에 따른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①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⁰⁾ 이사회의 결의로¹¹⁾ ② 주주의 일부가 ③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4 제1항).¹²⁾

전자주주총회 개최는 주주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①처럼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 결정에 이사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¹³⁾ 그런

7)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견해 변화를 보인 대표적인 것으로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3판, 박영사, 2018, 318쪽;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6판, 박영사, 2022, 337쪽.

8) 김신영, 앞의 논문, 45쪽.

9)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을 기대하려면 기업의 부담 경감에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예컨대, 정관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11) 미국 델라웨어 주도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GCL§211(a)).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제와 운영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권용수,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29~45쪽.

12)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김병욱 의원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656(2020. 8. 4))과 같다.

13) 김효정, “전자주주총회의 상법 도입 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111쪽.

데 다음과 같은 주주권의 보호 관점의 의의와 ②의 요건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사회 재량 인정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¹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때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①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차질이 생겨 주주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 주주권의 보호 관점의 의의가 인정된다. 한편, 개정안은 ② ‘주주의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이사회 재량이 인정되는 전자주주총회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뿐이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종전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더해 가상공간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에 따라 주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 재량 인정으로 기대되는 주주권의 보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주주권의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 관점에서 어떤 실익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권의 보호 외에 주주총회 개최 부담 완화라는 이점을 지니는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후자가 더 주목받는 면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보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비율이 압도적이고, 영상통신 없이 음성통신만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비율이 압도적이다.¹⁵⁾ 그 배경에는 비용적 이점이 있었다.¹⁶⁾ 현재 일본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회사법에 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주총회 개최·운영 비용 저감 측면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주목 받은 것이 있었다.¹⁷⁾ 이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주주총회 개최·운영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만을 상정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실무에서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정안에는 위의 ③처럼 기업 부담에 배려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그에 따른 부담 완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¹⁸⁾

14) 김순석,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 법무부, 2017, 26쪽; 김순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과 바림직한 개정 방향”, 「기업법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23, 15쪽; 김신영, 앞의 논문, 62쪽; 운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 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85쪽; 정준우,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445쪽.

15) 권용수, 앞의 보고서, 34쪽.

16) 권용수, 앞의 보고서, 35쪽.

17) 経済産業省,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7頁.

18) 상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등 특정 수단이나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자적 방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총회장과 주주 간 또는 주주 간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는 전자적 방법이어야 한다.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제6항에서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해당 규정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전자통신수단’을 언급하는 등 제542조의14 각 항과 정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제1항은 주주권의 보호 관점에 집중해 조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근본적인 주주권의 보호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느낌이 있다.

2. 대형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4 제2항).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¹⁹⁾ 지배주주 또는 지배력이 있는 주주가 존재하고, 심각한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한 상장회사에서는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이 점에서 상법 개정안을 이해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주주 측의 이점은 있지만, 기업 측의 주주총회 개최 부담 증가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사정이나 주주총회 개최 상황 등에 따라서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득실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를 지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⁰⁾ 대통령령으로 의무화 대상을 한정한다고는 하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득이 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²¹⁾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에는 적잖은 실무적·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통신장애 대책과 그에 관계된 결의취소 문제 등이 있다.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기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도 예기치 못한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²⁾ 절차적 권리 침해 구제보다 결의 사항에 대한 불만이나 경영권 분쟁 등을 배경으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예도 존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²³⁾ 위 상황이 결의취소의 소로 이어

19)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8496(2025.2).

20) 터키를 제외하고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김신영, 앞의 논문, 61쪽.

21) 일정 요소를 기준으로 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심한 예가 적지 않다(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범위 등).

22) 독일 닥스(DAX) 40 구성 상장회사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비율은 2022년 90%(36사)에서 70%대로 감소하였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따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필요성 저하 외에 기술적 문제 발생(2023년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회사 중 27%가 기술적인 문제를 경험하였다)이 있었다. 독일증권보호협회(DSW) 보고서를 보면 기술적 문제로 주주총회가 9시간 31분이나 걸린 예가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須磨美月·倉持直·長澤渉,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に係る法改正の諸課題と主要諸外国からの示唆(上) : アメリカ・ドイツ・イギリスにおける取組み”, 「商事法務」第2387号(商事法務, 2025), 26頁.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일본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문제의식을 보면 개최 비용·부담 증가에 관한 우려가 가장 컸고, 시스템 등의 기술적 환경 정비, 통신장애로 인한 결의취소 위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주주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우려가 그 뒤를 이었다.²⁴⁾ 전자주주총회 개최에는 상기와 같은 쟁점이 존재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통신장애에 관계된 결의취소 문제 등에 배려한 정함을 두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실무적·법적 쟁점에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자주주총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면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에 앞서 그 개최·운영에 관계된 실무적·법적 쟁점 해소를 목표로한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²⁵⁾

3.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3.1.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정 개최요건을 갖추 것을 상정한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제6항).²⁶⁾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으로 경제산업대신과 법무대신의 확인을 정하고 있다. 해당 확인을 받으려면 ① 통신방법에 관한 사무(다음의 ②③에 의거한 대응에 관계된 사무를 포함) 책임자를 둘 것, ② 통신방법에 관계된 장애 대책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 ③ 통신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 주주의 이익 확보를 배려하는 방침을 정할 것, ④ 주주명부에 기재·기록되어 있는 주주의 수가 100명 이상일 것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으로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 ② 주주 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결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 ③ 주주 또는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서 투표나 그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DGCL§211(a)(2)b).

그런데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에 관해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상법 개정안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을 규정하는 주요국의 입법례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23) 송옥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BFL」 제7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66쪽.

24) 商事法務研究会, “第4章その他(株主總會白書 2024年版)”, 「商事法務」第2376号(商事法務, 2024), 169頁.

25) 권용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23, 155쪽.

26)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제6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차이에 더해 현행법상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 상장회사가 결의취소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5 제1항에 근거해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 등을 고려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²⁷⁾에서 개최요건을 검토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을 회사법에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 관점에서 개최요건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²⁸⁾

3.2. 소집통지

상법 개정안은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4 제5항 및 제6항).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기존의 소집통지 기재 사항 외에, 주주에 대한 주지 또는 법적 위험 회피 등의 관점에서 일정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개정안의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문제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소집통지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가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기본이 되는 ①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② 출석 방법만을 소집통지 기재 사항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규정 검토 시에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집통지 기재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관계된 쟁점을 토대로 소집통지 기재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따른 법적 위험 회피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의 방식을 전제로 하면 ③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④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 ⑤ 주주의 질문에 대한 취급, ⑥ 동의 제출 및 체결, ⑦ 의결권행사 방식, ⑧ 통신장애에의 대응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상법 개정안이 상정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기준).

3.3.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

전자주주총회의 핵심적 의의는 주주권의 보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면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도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의사 진행이나 결의에 주주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5 제1항).

27) 일본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에 부합하는 통신장애 대책이 갖춰진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토대로,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經濟産業省,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8頁).

28) 經濟産業省,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7~30頁.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뜻을 내포한다. 크게 보면 ①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는 송수신 방법²⁹⁾이나 통신장애 대책 검토 등), ②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에 관계된 실무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등을 뜻할 수 있다. 여기서 ①은 앞서 살펴본 「3.1.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나 상장회사가 신경 써야 할 쟁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개최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환경 정비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는 「3.2. 소집통지」와의 관계에서 그 정도 등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의사 진행 시 정보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통신장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나 처리,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한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기재함으로써 상장회사에 요구되는 의무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에 관계된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본인확인부터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인정 여부, 주주의 질문에 관한 취급, 동의 제출 및 체결, 의결권행사 방식과 사전 의결권행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³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주주총회 개최요건이나 소집통지와 관계로부터 일정 보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개정안 제542조의 15 제1항과 같은 규정만으로 전자주주총회 전반의 적정한 운영을 피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생각건대, 기업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든 주주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에 관계된 중요한 쟁점(주주권익과 관계된 쟁점 등)과 관련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법 개정안은 아래에서 살펴볼 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더해서 주주의 질의 방법과 절차, 의장의 의사 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이는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3.4. 관리기관 지정

상장회사에 따라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상정된다. 이 경우는 주주권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29)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는 송수신 방법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주총회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예도 있었고, 영상 전달 없이 전화 회의나 인터넷을 통해 음성만 전달하는 예도 있었다. 그리고 영상과 음성 전달을 적절히 혼용하는 예도 있었다.

다만 주주가 음성만 전달하는 송수신 방법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의견이 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의장이나 주주총회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주주총회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의견에 일정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커 통신장애 초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한 주주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등 법적 위험을 상당 정도 증가시키는 면이 있다. 또한, 음성만 전달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30)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4~151쪽.

는 문제가 있다. 이로부터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효율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 진행이나 결의에 참여하는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5 제2항). 해당 관리기관과 그 임직원에게는 일정 의무가 부과된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전자주주총회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검토할 때 외부 시스템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쟁점을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다. 회사의 사정과 비용 부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효율성·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외부 시스템 활용 등을 결정할 것이다.³¹⁾ 이를 생각하면 법률에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의 위탁을 상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³²⁾

3.5. 기록 보존 및 열람 청구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3개월간은 본점에 비치하면서 주주의 청구에 응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주주나 투자자들이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능·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떠나서 ‘주주총회 개최 전 질문 접수’나 ‘인터넷 중계 시 질문 접수’ 등보다 ‘주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공시(총회 후 공시 포함)’나 ‘주주의 질문 공시(총회 후 공시 포함)’ 등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자주주총회 개최 후 기록 보존과 주주의 열람 청구 인정은 주주 후생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는 예 등도 눈에 띄었다. 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형성이나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에서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도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기록을 보존·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³³⁾

3.6. 출석 의제

우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해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542조의14 제3항). 이는 본인확인이나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 등을 포함한 회사 측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자주주총회

31) 예컨대, 일본에서는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유튜브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는 예가 적지 않다. 한편, 주식회사 그리처럼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에도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그 운용을 외부업자에 맡기는 예도 있다.

32) 김순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 『기업법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23, 21쪽.

33) 정준우, 앞의 논문, 464쪽.

개최 촉진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제364조(소집지) 해석에 따른 출석 인정 문제나 상법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 등을 지적하며 타당한 입법이라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³⁴⁾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전자주주총회 참여 실태 등을 생각하면 추가적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관계된 제약이 거의 없다. 우연히 생긴 여유 시간에 즉흥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도중에 퇴장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출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³⁵⁾ 이에 비추어 보면 언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주주의 진정한 의사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상법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등을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368조 제1항 등). 주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의에 참가하는 때’를 출석으로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Ⅲ.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과 의의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제

1.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을 위한 검토 과제

1.1.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주주총회는 기업과 주주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다.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결산, 임원 선·해임 등)이나 주주의 권리(질문, 동의 제출 등), 이사의 설명의무 등을 생각하면 주주총회만큼 주주가 존중받으면서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은 없다. 전자주주총회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내실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주주권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전자주주총회 자체의 의의를 생각하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는 그 개최 촉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원하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선택하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선택하기 쉬워질까? 주주총회 개최에는 상당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므로 때때로 비효율적 면이 강조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물리적 회장을 마련하는 것 없이 이어나 주주 등이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출석하는 주주총회, 즉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생각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개

34) 김순석, 앞의 논문, 17쪽; 김효정, 앞의 논문, 115쪽.

35) 윤영신, 앞의 논문, 95쪽.

36) 김신영, 앞의 논문, 82쪽.

최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과 그에 따른 주주권의 보호 차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일부 주주의 소외 가능성이나 경영진과 주주의 대면 기회 상실³⁷⁾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관 규정에 근거해 그 개최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정 정도 문제 완화를 도모할 수 있어 보인다. 독일에서는 2022년 시행된 주식회사법(AktG)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AktG§118a(1)). 거기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정관의 정함³⁸⁾에 근거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에 더해, 정관 규정의 유효기간(최장 5년)을 정하도록 하였다(AktG§118a(3)(4)).

참고로 2025년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회사법 개정 방향을 공개하였다. 거기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지향하는 기업이 선택하기 쉬운 제도 설계를 목표로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규정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을 회사법에 규정하고, 경제산업대신·법무대신의 확인 절차와 전자주주총회 개최 저해 요인을 해소(개최요건, 통신장애 발생 시 취급 등 검토)하는 방안 검토를 언급하였다.³⁹⁾

1.2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예외 인정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상 ‘출석’을 전제하는 것인 만큼, 현장주주총회와 같은 수준의 주주권 등 보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시에는 현장주주총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실무(본인확인, 질문·동의 취급, 의결권행사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한다는 특이성이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본인확인, 질문 등의 취급,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쟁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자칫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런데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도,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장애 등의 문제로 검토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통신장애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통신장애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충분히 취한 경우, 통신장애 등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완화

37)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의 의견 중에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문장으로만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구두에 의한 경우보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해지고 주주와의 대화가 원활해진다’ 등이 있었다(경제산업성,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7頁).

38) 정관에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을 두거나 이사에게 개최 결정권을 위임하는 뜻의 규정을 둘 수 있다.

39) 경제산업성,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7~29頁.

40)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단 상법 개정안이 상정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 출석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 주주가 통신장애 등의 가능성을 고지받고도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선택한 경우를 종전의 주주총회에서 출석 기회를 잃은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⁴¹⁾ 또한, 통신장애 등으로 일부 주주가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 등을 결의 방법의 하자로 보고 주주총회 결의취소를 인정할 경우, 주주의 출석 선택지 확대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상을 생각하면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대책을 취한 경우는 기업 측의 통신장애 등으로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가 의사 진행 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필요가 있다.⁴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 출석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도 통신장애 등에 따른 결의취소 위험 등에 배려하지 않으면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주요국에서도 통신장애 등에 따른 법적 위험에 배려하는 입법례 등이 눈에 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기술적 장애에 기인한 의결권 침해 등의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AktG§243(3)1).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을 의도한 제도 설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을 회사법에 두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업이 통신장애 대책을 충분히 취한 경우는 통신장애에 기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의 범위를 한정(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⁴³⁾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주주 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결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DGCL§211(a)(2)), ‘합리적인 기회’ 제공은 주주총회 중에 예기치 못한 인터넷 정지 또는 회사가 제어할 수 없는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때에,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와의 통신 두절이 정족수 위반으로 이어지거나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가 관여한 심의 결과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⁴⁴⁾

2. 전자주주총회 의의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제

전자주주총회 개최(특히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내재한 주주권의 보호 관점의 의의를 생각할 때, 기본은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가 자사의 주주 구성이나 성질 등 주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

41) 김신영, 앞의 논문, 69쪽.

42)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492쪽.

43) 經濟産業省, 「稼ぐ力」の強化に向け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研究会 会社法の改正に関する報告書(2025年1月17日), 29頁.

44) 권용수, 앞의 보고서, 31쪽.

지 않고 자신의 이익(주주총회 개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선택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때문에, 전자주주총회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주권의 보호 등의 관점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계된 여러 쟁점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①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전자통신 수단이나 통신장애 대책, 출석 의제 규정, 소집통지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계된 쟁점, ② 본인확인 및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총회 출석과 사전 의결권행사 효력, 주주의 질문에 관한 취급, 동의 제출, 의결권행사 방식 등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관계된 쟁점, ③ 기록 보존 및 열람 청구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후에 관계된 쟁점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특정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상법 개정안 또는 그에 따른 상법 시행령 개정에서 적절히 담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⁵⁾ 아래에서는 향후 작업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려 한다. 단, 전자주주총회 관련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나 필자도 관련 선행연구를 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모든 쟁점을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며, 인식이나 상황 등의 변화로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쟁점만을 검토한다.

2.1. 본인확인

전자주주총회도 ‘출석’을 전제한다면 주주권과의 관계로부터 주주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쟁점은 어떤 방식의 주주 본인확인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보안이나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관점에서 보면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출석 기회 보장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나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생각하면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게 적절할지 의문이 있다. 개정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외에,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인정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핸드폰,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의 본인확인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⁴⁶⁾ 이처럼 전자적 방법의 본인확인 방법을 확대하는 추세와 새로운 방법이 현실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버금가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역시도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즉,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은 회사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⁴⁷⁾

45) 주주의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김순석, 앞의 논문, 24쪽.

46) 김신영, 앞의 논문, 72쪽.

47) 권중호, “비주주총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05), 131쪽;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전자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지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한국비교사법학

위와 같은 이해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관련해서도 의의가 있다.⁴⁸⁾ 전자주주총회 도입 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쟁점의 하나로 외국인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행사에 관계된 주주 본인확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법의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과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을 같은 수준으로 상정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주(개인, 법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행사는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간단·신속하게 다수 주주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회사법상 주주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특별한 정함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는 엄격한 본인확인 방법보다 주주권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⁵⁰⁾ 이로부터 실무에서는 기업마다 간단·신속하게 다수의 주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2024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상장회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사가 통지한 랜덤 ID·패스워드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이 58.8%(전년 대비 17.9% 증가)를 기록하였고, ‘주주 고유 정보(주주 번호, 우편번호 등) 복수 이용에 의한 본인확인’이 41.2%(전년 대비 17.9%)를 기록하였다.⁵¹⁾ 전자의 방법은 매번 다른 ID·패스워드가 부여되는 한편, 후자의 방법은 불변의 정보를 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2. 외국인 투자자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우리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⁵²⁾ 등 국내 투자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⁵³⁾ 한편, 해외투자자는 주주총회 출석이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회, 2004), 311쪽; 윤영신, 앞의 논문, 94쪽.

48) 이하 내용은 권용수, “일본의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확인 방법”, 『ISSUE PAPER』 Vol.107, 상장회사협의회, 2024.

49) 이정욱,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실무적 쟁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2024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2024, 13쪽.

50) 일본의 판례는 의결권행사서면 제시 이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입증했음에도 주주총회 입장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한 출석 거절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의결권행사서면 등에 의한 주주 본인확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사무 효율화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村上康司, “株主資格の確認・代理行使と株主總會決議の取消し : 札幌高判令和元年7月12日金融・商事判例1598号30頁”, 『愛知学院大学論叢・法学研究』第62卷 第3・4号(愛知学院大学法学会, 2021), 50, 54頁.

51) 商事法務研究会, “第4章その他(株主總會白書 2024年版)”, 『商事法務』第2376号(商事法務, 2024), 165頁.

52)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②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 편의성 제고, ③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보도자료(2023.12.14.).

53)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등 홍보”, 보도참고자료(2025.2.21.).

54) 박경은, “외국인 주주, 주총 의결권행사 어려워 ... 출석 절차 모르는 상장사도”, 연합뉴스(2024.11.25.).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향후 해외투자자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이나 의결권행사 등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일본의 논의와 실무 동향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내용을 검토한다.

2.2.1.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행사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 보충원칙 1-2④에서는 ‘상장회사는 자사의 주주 중 기관투자자나 해외 투자자의 비율 등도 고려해 의결권 전자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의결권전자행사 플랫폼 이용 등)나 소집통지의 영문 번역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프라임시장 상장회사는 적어도 기관 투자자용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실무에서는 해외 기관투자자 현황이나 의결권행사 등을 고려해 ① 사전 의결권행사 수단으로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을, ②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행사 수단으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이용하는 예가 있다. ①의 경우는 의안 검토 기간 확대(1주 정도)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환경 개선, 상장회사의 의결권행사 결과 조기 파악,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의 대화 기회 확보 등의 이점이 있다.

① 일본의 사전 의결권 전자행사 유형은 주주명부관리인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형(주주명부상 명의주주가 대상)과 ICJ⁵⁵⁾의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⁵⁶⁾을 이용하는 유형(명의주주의 배후에 있는 실질주주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산관리 전업의 신탁은행 명의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보관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다.⁵⁷⁾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의미를 지니는 것은 후자라 할 수 있다.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1,839사가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⁵⁸⁾ 해당 플랫폼 이용 시 의결권행사 흐름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ICJ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여럿 존재하는 게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 이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12월 12일부터 ISS의 플랫폼 시스템과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⁵⁹⁾

55) ICJ는 도쿄증권거래소와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의 합작회사로 2004년 7월에 글로벌 의결권행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Broadridge와 협력해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을 구축하고, 200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https://www.icj.co.jp/> (검색일 : 2025.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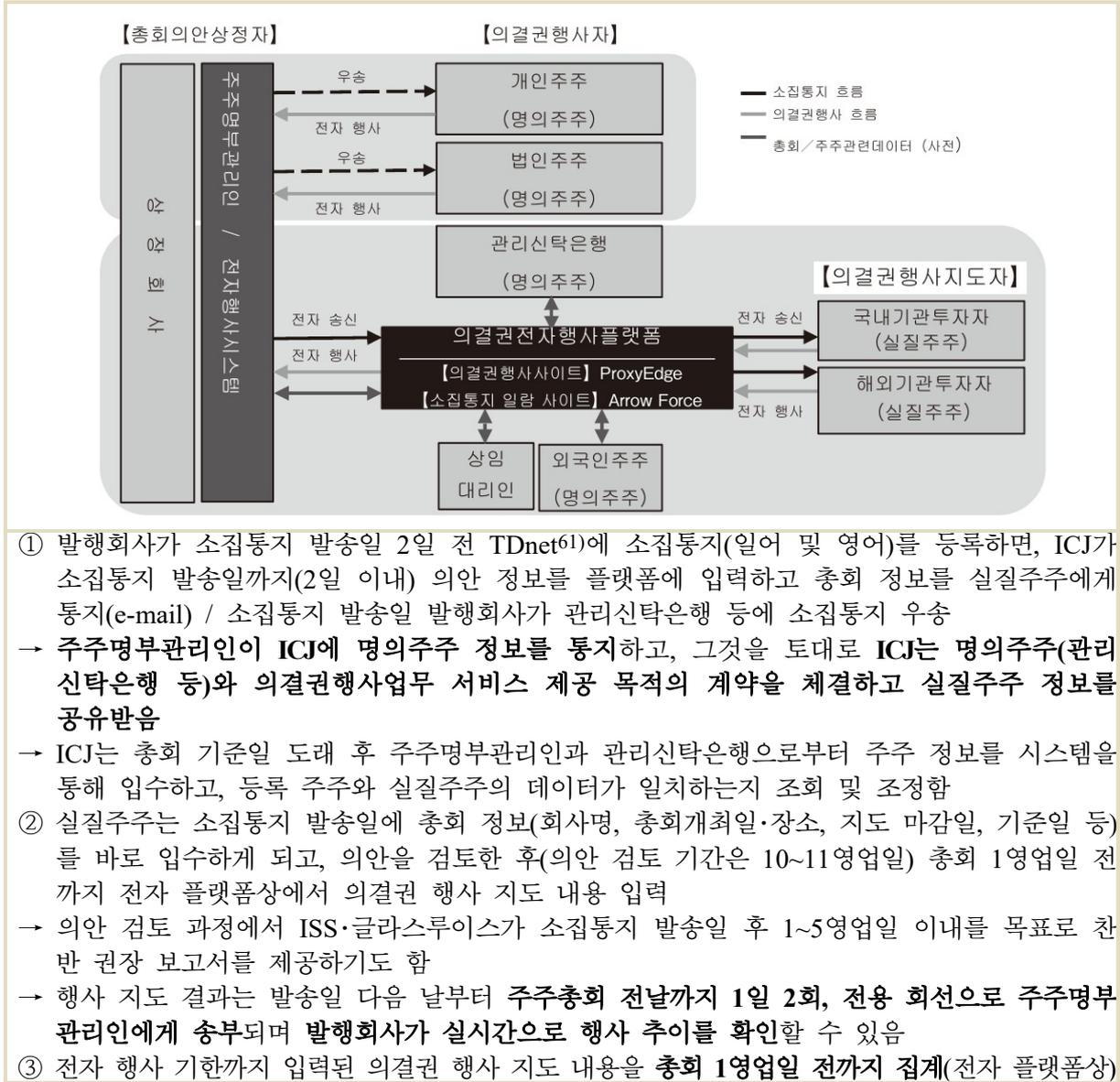
56) 의결권전자행사플랫폼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총회에 관계된 국내외 관계자를 시스템·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주주총회 의안 정보 전달, 의결권행사, 행사 결과 집계를 모두 스트레이트 스루 프로세싱(Straight-through Processing, STP)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57) 주주명부상 주주는 의결권행사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실무가 정착한 배경에는 운용과 보관을 분리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 자산관리자로서의 기관투자자는 최종 고객의 자금을 맡고 있는 이상 스스로 주식을 구매하지 않는 관행(이해상충 문제 회피) 등이 있다.

58) https://www.icj.co.jp/pf_list/ (검색일 : 2025.4.19.).

59) <https://www.icj.co.jp/news/information/2591/> (검색일 : 2025.4.19.).

[그림 2] 기업의 경영 개혁을 뒷받침하는 체제⁶⁰⁾



② 일본에서는 ICJ가 주주총회 당일 시청·질문·의결권행사를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ICJ는 미국에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드릿지(Broadridge)를 포함한 국내외 관계자의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유럽 최대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제공하는 영국 루미(Lumi)와 협력해 일본 제도·실무 관행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질문이나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므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외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도 대응할 수 있다. 주식회사 FIXER, 코카콜라 보틀러스 재팬 홀딩스 등이 2024년 ICJ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이용해 일영 동시 전송 형태 등의 현장대체형 전자주

60) 권용수, 앞의 자료, 11쪽.

61) TDnet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적시공시정보전달시스템(Timely Disclosure network)을 말한다.

주총회를 개최한 예가 있다.⁶²⁾ 일본의 경우 기업의 사정 등에 따른 폭넓은 본인확인 방법이 인정되는 점⁶³⁾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기대할 수 있다(대리인 출석 문제 검토 필요).

2.2.2. 대리인 출석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 보충원칙 1-2⑤에서는 ‘상장회사는 신탁은행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신탁은행 등을 대신해서 스스로 의결권 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은행 등과 협의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2015년 4월 공개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 촉진연구회 보고서」와 같은 해 6월 각의결정한 「일본재흥전략 2015」에서 명의주주 이외의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때의 생각이나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을 요구하였다. 그 배경에는 기업과 투자자가 기업 가치와 자본효율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총회 출석 방법 등이 논의되었고,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대리인으로서 출석⁶⁴⁾하는 방안 등⁶⁵⁾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기업의 가치 제고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또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해외 기관투자자 등과의 소통이 더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자주주총회 대리인 출석 논의를 재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는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할 실익은 적고, 기업의 본인확인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⁶⁾ 한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는 대리인의 출석

62) <https://www.icj.co.jp/vsm/cases/> (검색일 : 2025.4.19.).

63) ICJ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은 주주마다 고유 ID·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간단한 주주인증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보안 기준 준거).

64) 해외 기관투자자가 명의주주가 아닌 경우는 회사법상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등 주주권 행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여하면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이러한 문제로 해외 기관투자자가 명의주주인 경우는 대리인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등 특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회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이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일본 상장회사 다수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삼자로 인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을 명의주주로 한정하는 것은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65) ① 주주총회 기준일 시점에 A가 1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자가 되고, 100만원의 명의주주 N에 관계된 대리권을 받아 총회에 출석하는 방법, ② 회사 측의 합리적 재량에 따르는 가운데 총회 당일 주주총회를 방청하는 방법, ③ 특별한 사정을 발행회사에 증명한 후 N의 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하는 방법, ④ 발행회사가 정관 규정을 변경하고 A가 N의 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③의 특별한 사정은 명의주주가 아닌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해도 주주총회가 교란되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저해되는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해야 하는 사정을 말한다.

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주의 인터넷 사용 여건이나 활용 능력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⁷⁾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필자 역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대리인 출석 제한에 공감해 왔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가 지닐 수 있는 의의를 생각하면, 기업의 업무 부담 가중에 배려하면서 해외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출석 인정을 고민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IV. 마치며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복합적 위기가 심화하고 글로벌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을 고려하면서 신속·과감하게 경영 판단을 내리고 공격적인 성장 투자(GX 등 포함)를 제때 실행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 상실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위험(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영진에게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면도 있다. 이상을 곱씹어보면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영진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⁶⁸⁾ 기업과 주주 등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목적을 지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주주총회에 내재한 의의를 생각할 때,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에서 본 논문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였고,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 관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과 주주총회 결의취소 예외 인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다만 상장회사가 자사의 주주 구성 등 주주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주주총회 개최 부담 완화 등)만을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부터 기업과 주주의 대화 심화나 주주권익 보호 등에 배려한 입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은 긍정하였다.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 심화와

66) 김효정, 앞의 논문, 129쪽. 일본 실시기이드에서도 ‘대리인의 출석을 현장주주총회에 한해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라는 뜻을 밝혔다(經濟産業省, 하이브리드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実施ガイド(2020年2月26日), 16頁).

67) 김효정, 앞의 논문, 131쪽; 윤영신, 앞의 논문, 103쪽.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도 본인확인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로 김신영, 앞의 논문, 74-75쪽.

68) 현재보다 먼 미래의 기업 가치 제고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경영진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실현 등의 관점에서 배려해야 할 쟁점은 다양한데,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인식이나 상황 등의 변화를 생각할 때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쟁점으로 해외투자자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에 관계된 쟁점을 지적하였고, 본인확인 방법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대리인 출석의 예외적 취급 검토를 제안하였다.

【토론】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토론문

황 남 석*

권용수 교수님의 발표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쟁점을 조망하며 나아가 입법의 평가 및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 매우 시의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로 한정된 입법방식의 한계, 대형상장회사 의무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토론자로서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병행형에 한정된 입법방식

발제자께서는 개정안이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유형 중 현장병행형(출석형)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현장대체형이 과연 주주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관한 예상이 상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의사형성절차의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전원 비출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즉 그 경우에도 주주총회는 성립) 적어도 현장 참석을 희망할 경우에는 참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주주총회 실무에서도 이미 주주들의 의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완전한 현장대체형이 입법될 경우 적정한 집단적 의사형성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주총회가 단순한 요식행위라면 모를까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중요시한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현장 참여의 기회는 최소한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주식법 제118a조 제3항이 현장대체형을 도입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

* 경희대학교

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정관이 자동으로 실효되므로 다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관을 새로 갱신하여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독일문헌은 5년의 기간을 두고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대형상장회사 의무화 조항에 대한 우려

권 교수님이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대형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조항은, 실무상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설사 의무화를 도입하더라도 그 점진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 설문조사(2022년, 상장회사협의회)에서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긍정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의무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일정한 유인책 (incentives)을 제공하는 유도방식이 더 적절함을 시사합니다.

3.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기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법 시행령에 포괄적인 위임 규정을 두거나 혹은 연성규범의 형식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토론문

김 신 영*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환경 역시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 개정안”)이 -비록 최종적으로는 무산되었지만- 국회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의 입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고 그 의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전자주주총회 입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현재 시점에서, 개정안이 보다 정비되어 국회의 문턱을 완전히 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이번 발표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발표자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발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 4페이지 내용의 이해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전자주주총회는 개최는 주주권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의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제1항과 같이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재량에 맡기더라도 주주의 이익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다소 압축적으로 서술하시다 보니,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페이지 맨 위의 부분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주주 권익(이익) 보호” 측면이라

* 전남대학교

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4페이지 6줄에 있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종전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더해 가상공간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주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에 따라 주주권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 재량 인정으로 기대되는 주주권익 보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은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지, 전자주주총회가 주주권익을 훼손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가 아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진행할 경우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등 위 두 문장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가상주주총회와 더불어 현장주주총회도 병행하므로,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의사를 피력하고 경영진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에 비하여, 주주권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 opt-ou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이사회가 기동적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주주권익 보호를 관철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서 “이사회 재량 인정으로 기대되는 주주권익 보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처럼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을 위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발표문이 더욱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상장회사에 한정된 전자주주총회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542조의14에 두어, 전자주주총회 허용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소견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주주총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운영할 것인지는 회사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모두 허용되어야 하고, 상장회사특례 규정이 아닌 361조 이하 주주총회 관련 부분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상장회사에만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발표자께서는 비록 주주권익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의무화하지는 않고 임의적인 제도로 두되, 그 입법방식은 opt-out 방식을 취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는 달리, 정관 규정에 근거해 그 개최를 허용하는 opt-in 방식을 채택하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주주권익 훼손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발표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입법방식을 opt-out 방식으로 할지 opt-in 방식으로 할지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그 정도가 덜 한 경우는 opt-out 방식을, 그 정도가 큰 경우는 opt-in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에게 현장 출석 또는 가상 출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권익이 훼손되는 측면은 덜 할 것입니다.

반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면 현장 출석 주주에게 인정되었을 만한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가상 출석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렇다면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opt-out 방식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opt-in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해외투자자의 전자주주총회 대리인 출석 인정

발표자께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대리인 출석 인정을 고민해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가상 출석을 인정할 실익은 적은 반면,¹⁾ 실무상 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는 번거롭고 사무처리 비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어, 대리인에 의한 가상 출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신 해외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은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 명의주주가 아닌 해외투자자에게 대리인으로

1) 실제로는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부여한 ID나 비밀번호, 접속코드 등을 대리인에게 알려주고, 대리인이 주주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선호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서의 출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님의 견해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투자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급하자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정이나 운영방식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나 운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세 셴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사회: 심 인 숙

발표: 이 정 수

토론: 안 상 희 / 김 유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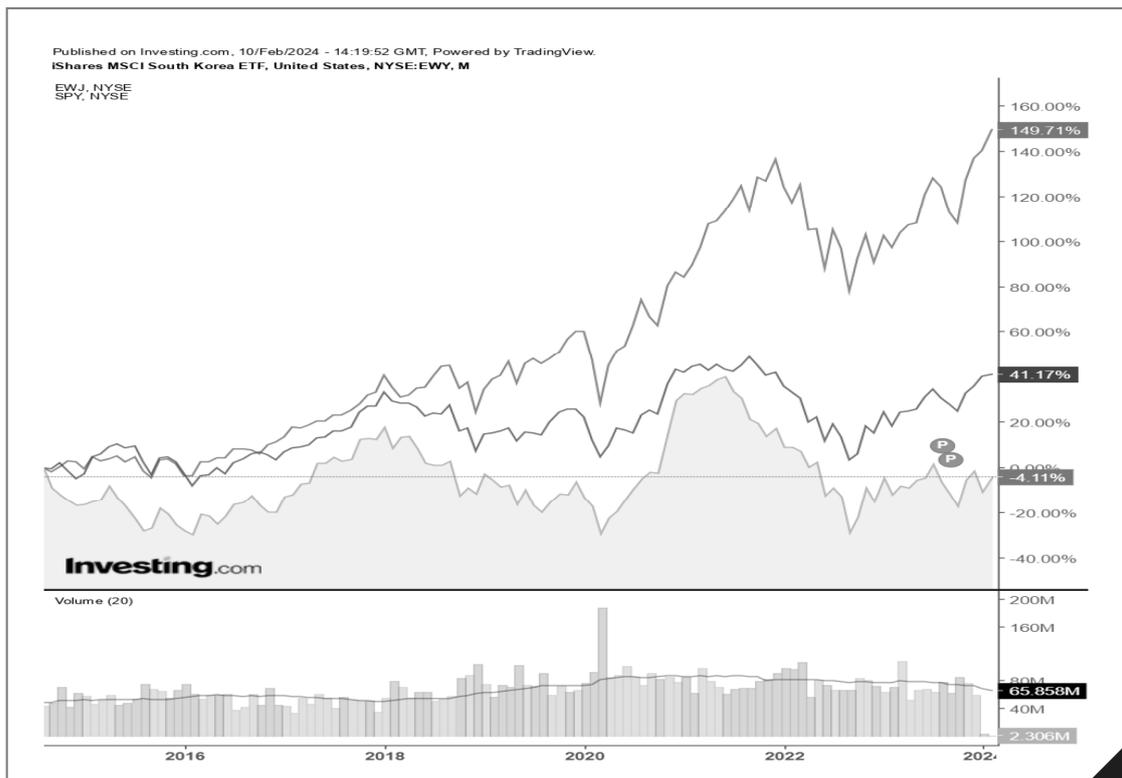
【제2세션】

2025년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상사법제의 최근 동향과 지향점 (2025. 4. 25.)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I. 서론 : Korea discount?



I. 서론 : Korea discount?

증권

“한국주식 탈출은 지능순?”...저평가주 뛰어도 개미들 ‘콧방귀’

최근도 기자 recentdo@mk.co.kr
입력 : 2024-02-07 15:17:24 수정 : 2024-02-07 15:58:10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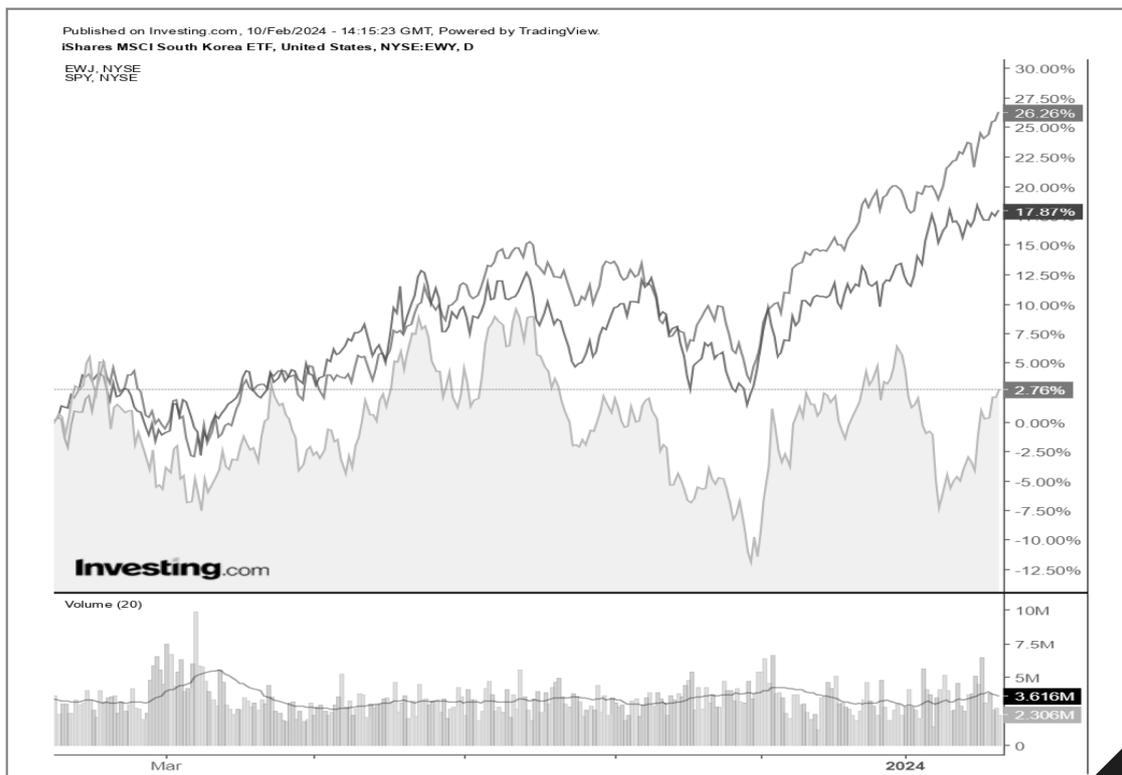
“국장 탈출은 지능순”

주식커뮤니티엔 언제나 이같은 코스피 비하가 심심찮게 보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인 저PBR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단기 호재로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크다. 저PBR주라는 사실보다는 해당 주식이 향후 주주 환원을 늘려 고PBR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기대감을 갖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I. 서론 : Korea discount?



I. 서론 : Korea discount?

한국경제 구독중
PICK ①

日 '주주환원' 벤치마킹...기업가치 제고 나설 것

입력 2024.02.07. 오후 6:59 - 수정 2024.02.08. 오전 1:21 기사원문

강경민 기자

6
9

🔍 🔊 🔗 📄 📧

| 최 부총리, 대전문가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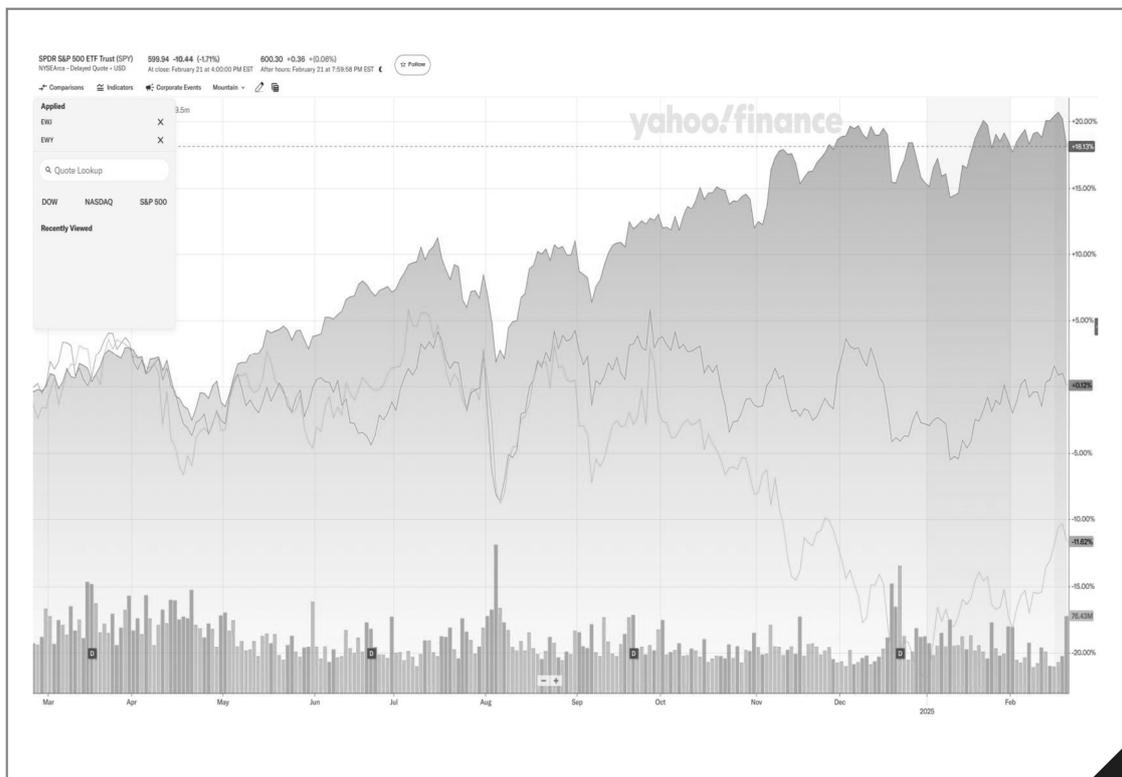
일본 증시가 '버블경제' 붕괴 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배경엔 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본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등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컫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배우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간담회엔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등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특정 국가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지난달 버블경제 붕괴 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 경제 성장률도 1.9%(잠정치)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1.6%)를 웃돌았다. 참석자들은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엔저 등 거시요인뿐 아니라 기업 체질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본 증시의 호황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도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 서론 : 최근 1년의 경과



I. 서론 : 조선일보 기고 (2024.6.24.)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기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위의 제책만으론 힘들어
당근 가진 정부 전체 나서야
지배구조 관련 법안 묶어 입법
야당 지지 얻어 법 개정 필요
案 만들어 빠르게 추진
투자자들 해외 유출 막아야

지난 2월 도쿄대 법대 상법 교수들과 도쿄대에서 자본시장 관련 학술 회의를 한 바 있다. 단연 관심 사항은 양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10년 한국 시장의 성과가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참석한 학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도대체 한국 자본시장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과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력 등이 지적된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만 분석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나는 금융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또한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족하다.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규제 측면이다. 하지만 뭔가 일이 되려면 채찍과 당근, 모두가 필요하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당근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다. 다른 부처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정책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기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

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한다면 정부가 당연한 연금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새로운 세수 확보 수단도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넓게 보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전체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닌 이유이다.

둘째, 정치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빠져있다.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흔히 이야기가 나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확히는 야당의 지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 세제 개편을 단독으로 놓고 보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야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에 그간 논의만 되어온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을 더해보면 전혀 다른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범위 확대, 징벌적 배상의 도입 등 번번이 기업 측의 반대로 무산된 수많은 법안들이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입법을 도모한다면 어떨까. 정치적인 합의의 기반이 지금보다 공고해 마련된 시점을 찾기도 어렵다.

셋째, 안을 만들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매력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다른 시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산업 체계,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장단기로 나누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 이유는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안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하더라도 세수의 감소나 부의 이전 수단이라는 생각이 가로막는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자체가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현실을 고려하면 배당은 기업의 이익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훨씬더러 그 자체로도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다.

'국정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 결과가 어떠하였음을 아는 입장에서 틀렸다고만 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아닌 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자본시장의 성장 열매가 어디에 맺힐 것인가.

나는 2년 여 전에 작은 돈이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였다. 초심자의 운도 따르지 않은 모험인지 이 글을 쓰는 지금 20퍼센트가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 아직 그 결과를 모르는 아들이 먼 훗날 성인이 되어 투자의 성과를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능이 낮아 국장에 투자한 것이라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다.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I. 자본시장 선진화

1. 자본시장 선진화의 의미

- 자본시장선진화란 자본시장(금융시장)의 구조, 제도, 운영 방식 등을 국제적 기준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것 →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
- 종래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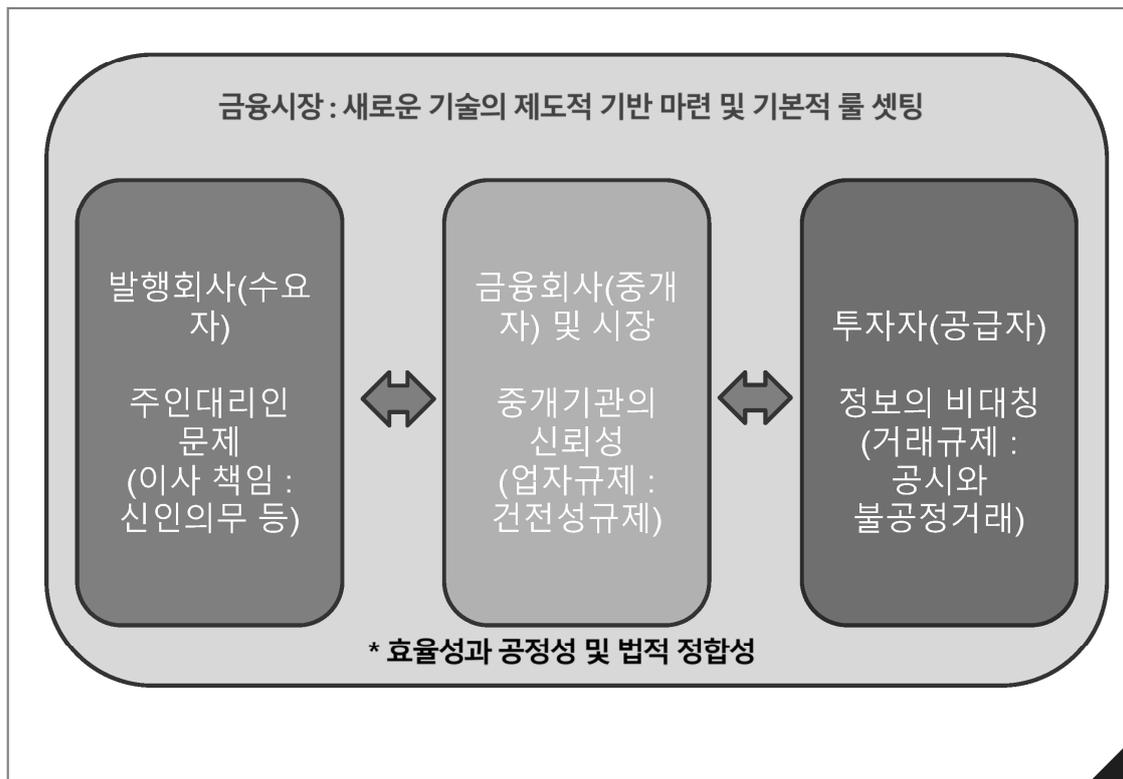
2.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금융법의 측면)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수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 기업금융의 효율성 제고 :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및 자금조달능력 제고
-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 공정한 시장관행의 형성과 투자자 보호
-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 : 새로운 금융수단에 대한 대응 등

3. 평가기준

- 효율성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자금조달능력
- 공정성 :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 법적 정합성

II. 자본시장 선진화



III. 기업지배구조

1. 이사의 충실의무

2. 물적분할상장제도개선:상장사 물적분할 시 공시 강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노력 심사

3. 자사주 제도개선: 인적분할 시 상장사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4. 의무공개매수

5. 합병분할등의 경우 일반주주 보호: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계열사간 합병시 가액 산정기준 폐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 근거 마련

6. 일반주주축출

7. 임원보수통제

III-1. 이사의 충실의무

1. 도입 경위

-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부재함. 이로 인해 이하의 문제들이 발생함.
- (1) 우리나라 기업들의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음.
- (2)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인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내용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

현행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III-1. 이사의 충실의무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제안
2025.02.2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적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단, 국민의 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힘. 만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표결절차를 밟게 됨.)

4. 평가

-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소송 남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복잡해져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III-2. 물적분할 · 상장 제도 개선

1. 도입 경위

-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특히, 2020년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음.

2. 내용

- (1) **상장사 물적분할 시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 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함.
- (2)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이에 따라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지고,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함.
- (3)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노력 심사**: 상장과정에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여부, 주주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반주주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함.

III-2. 물적분할 · 상장 제도 개선

3. 진행 상황

-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하며 물적분할 자회사 관련 3중 보호장치 제도화를 예고함.

항목	날짜	내용
상장사 물적분할시 공시 강화	2022.10.08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022.12.20.	자본시장법 제176조의7 제1항 개정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노력 심사	2022.09.28.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2.12.07.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상장규정 개정

4. 평가

- 기업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실제로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III-3. 자사주 제도개선

1. 도입 경위

- 그동안 자기주식이 주주환원보다는 회사의 재산을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음.
- (구체적으로는 ① 인적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이른바 자사주 마법), ②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 ③ 우호주주 확보를 위한 회사 간 주식 상호 보유 문제, ④ 자기주식의 계속적 보유 및 소각 미실시 문제, ⑤ 시가총액 산정 시 자기주식을 공제하지 않는 문제, ⑥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공시의 부족 등이 주로 비판을 받아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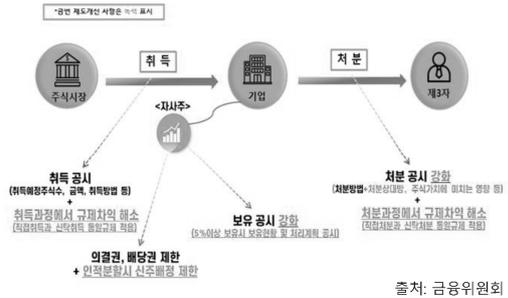
2. 내용

(1) 인적분할 시 상장사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던 신주배정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 시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함.

(2)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하며,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 시 목적,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III-3. 자사주 제도개선

2. 내용 (계속)

- (3)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 전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함.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4.01.30.	금융위원회에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2024.06.3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2024.12.2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12.3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4. 평가

-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II-4. 의무공개매수

1. 도입 경위

- 국내 대부분의 M&A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권리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EU, 일본, 영국 등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입법예	매수대상*	매수대상	매수가격
EU	• 경영대상* 대상 취득 (+외국인 공관사할)	• 잔여주주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영국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독일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일본	• 1/3 초과 취득 • 2/3 초과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취득 • 잔여주주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홍 콩 증권거래법	• 25% 이상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취득 (최소 50%+1주 이상)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미국		• 제도 미도입	

출처: 금융위원회

2. 내용

-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요건: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매수가격: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매수물량에 대한 두 가지 방안
 - (1) **100% 모두 취득:** 잔여지분 전량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로 취득
 - (2) **50%+1주만 취득:** 잔여지분 가운데 (총 발행주식의 50%+1주 - 경영권 변경 전 지분 취득 분) 만큼만 공개매수로 취득 (이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①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②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규율)

III-4. 의무공개매수

3. 진행 상황

연도	내용
1997 ~ 1998	50%+1주 인수 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했었으나, 외환위기가 터지며 IMF의 요구에 따라 1년여 만에 제도 폐지
2022	정부와 여당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됨
2024 ~	야당의 100%매수를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2024 ~	50%+1주 매수를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4. 평가

- M&A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됨.
- 한편, 인수대금이 높아져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업 M&A시장 위축 등 우려도 존재함.

III-5. 합병·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 보호

1. 도입 경위

- 최근 수년간 일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일반주주의 이익은 침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옴.

(사례1) 2020년 LG화학, 2021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사업부인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사례2) 2024년 7월 두산그룹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상장회사인 두산밥캣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시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개편으로 인해 (주)두산의 두산밥캣에 대한 지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두산밥캣과 두산에너지빌리티 일반주주의 피해가 예상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음.

2. 내용

- (1)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함.
- (2) **계열사간 합병시 가액 산정기준 폐지:**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이전에는 상장사 합병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계산식을 만족하면 문제제기가 어려웠음)

III-5. 합병·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 보호

2. 내용 (계속)

- (3)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 근거 마련:**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목적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4.03.04.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12.02.	금융위원회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하여 비계열사간 합병 등 관련 제도개선
2024.12.03.	자본시장법 개정안(윤한홍의원 등 16인)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4. 평가

-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업과 주주 간 논의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일반주주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III-6. 일반주주추출

1. 도입 경위

- 현행법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 보호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 판결(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1만대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만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는 이례적인 주식병합을 하더라도 적법함.

2. 내용

-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함.

주요 신설 조항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③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식병합의 사유
2. 주식병합의 비율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병합하는 주식의 종류
4.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

III-6. 일반주주추출

2. 내용 (계속)

주요 신설 조항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가액을 회사와 종전의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30일 내에 제1항의 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종전의 주주는 법원에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신주의 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441조의2(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병합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4.06.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 후 국회 계류 중

4. 평가

- 주식병합을 통해 소수주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II-7. 임원보수통제

1. 도입 경위

- 고금리 속 막대한 이자이익을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이 논란이 되며 은행권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 내용

- 금융회사 등기임원 보수지급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함.

구분	현행	개정
임원 등의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최소 이연비율 : 40% 이연기간 : 3년	(1) 최소 이연비율 : 50% 이연기간 : 5년 (2)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유보에 대해 명확한 세부 기준 마련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Say-on-pay)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 승인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에서 설명 (등기임원 임기 중 1회 이상)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등기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

III-7. 임원보수통제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3.02.22.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구성
2023.04.19.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 당시 추가적인 논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의 추가적인 진행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4. 평가

- 은행들이 경영에 중장기 손실이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게 되리라 기대되고, 은행의 보수 지급기준이나 보수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은행권에서는 이는 결국 성과보수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어서 임직원의 사기 저하를 우려함.
-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임.

IV. 기업금융 – 자본시장 발행, 유통규제

1. 배당절차 합리화

2. 외국인 ID 폐지 및 영문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옴니버스 계좌 제도 개선,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3. CB/BW 발행/공시제도 개선: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리픽싱 합리화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방지

4. 상장폐지 등 제도개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

5. IPO 제도개선 – IPO 허수성 기관 청약 규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강화

6. BDC

IV-1. 배당절차 합리화

1. 개선 경위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 → 투자자는 배당금 액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후 배당결정 수용
- 배당 예측가능성 하락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
-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게 배당액 결정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

2.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3. 01. 31.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할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2025. 1. 21.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2025. 7. 22.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

IV-1. 배당절차 합리화

3.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4. 평가

구분	전체 상장회사 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회사 수	비율
유가	784	180	22.9
코스닥	1,574	616	39.1
합계	2,358	796	33.7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 의지 높음 → 개선방안 실효성 기대,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

IV-2.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개선 등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외국인ID) 폐지

(1) 개선 경위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야 계좌 개설 가능
- 문제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불편 초래,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
- 기대 효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접근성 제고

2.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23.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3. 12 시행
- 법인은 LE (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로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p>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삭제

IV-2.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개선 등

2. 옴니버스 계좌 제도 개선

(1) 개선 경위 및 기대 효과

- 옴니버스 계좌 (외국인 통합계좌):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할 목적으로 본인(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 문제점: 2017년 도입되었으나 보고 의무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용 사례가 없었음
- 기대 효과: 거래비용 감소,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 업무 간소화

(2)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의무 부담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최종 투자자 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 → 월 1회로 완화 - 외국 증권사 등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t월) 말일 기준 최종 투자자 별 투자내역을 익월(t+1월) 10일까지 제공 → 국내 증권사는 해당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t+1)월 15일까지 보고

IV-2.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개선 등

3.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 개선 경위 및 기대 효과

-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 환경 개선

(2)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상장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 '23.3.유가증권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24 1단계 의무화 → '26 2단계 의무화 예정

유가증권공시규정 ('23. 3. 개정)

제48조(영문공시)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 거래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24조의2의 기업지배 구조보고서 및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공시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9>

1단계 상장법인 ('24 의무화)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을 5%미만 제외), 외국인 지분을 30% 이상(자산 2조원 미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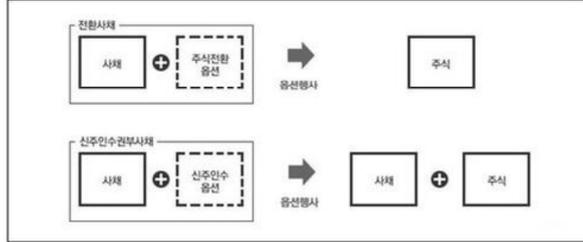
2단계 상장법인 ('26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예정)

IV-3. CB/BW 발행/공시제도 개선

1.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24. 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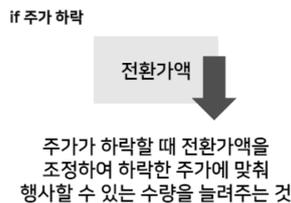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 공시 →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움	①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행사자, 제3자 양도 시대가 수수 여부, 지급금액 등 공시
② 만기 전 재매각 관련 문제점 →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 →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 제공 X	②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 공시 (만기 전 취득 사유, 소각 또는 재매각 등 향후 처리방법)

IV-3. CB/BW 발행/공시제도 개선

2. 리픽싱 합리화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방지 (24. 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1) 리픽싱의 개념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 (예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70% 미만 적용 허용) →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통상의 사유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를 이유로 최저한도 제한을 회피	① 전환사채 등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
②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조정 방법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일부 기업들의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②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 가능

IV-3. CB/BW 발행/공시제도 개선

3. 평가

- (1)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 (2) 리픽싱 합리화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방지: 과도한 주주가치 희석 및 오버행 위험 방지

리픽싱의 위험성	주주가치 희석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바꿀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을 희석의 위험이 더 높아짐
	차익실현으로 인한 주가 하락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폭락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음 (오버행)

IV-4. 상장폐지 등 제도개선

1. 개선 경위

- (1)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 지연**
 - 상장회사수 증가율은 높지만 주가상승률은 높지 않아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수 대비 시가총액"도 낮은 수준임.
- (2) "상장폐지 = 기업투자자 피해"가 강조되며 **상장폐지 요건은 완화적이고 절차는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중**
 - 저성과 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①**상장폐지 요건 강화** & ②**절차 효율화** + 퇴출확대로 인한 ③**투자자보호** 이슈 보완 위해 비상장거래 및 공시 관련 제도 개선

2. 내용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 ① [재무]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 기준 강화: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매출액(시총 1,000억 원 미만만 적용)	시가총액	매출액(시총 600억 원 미만만 적용)
현행	50억 원	50억 원	40억 원	30억 원
상향	5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	100억 원

IV-4. 상장폐지 등 제도개선

2. 내용 (계속)

- ② **[비재무]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 강화 (현행)** 감사의견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이의신청시 개선기간 부여 → **(개선)**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시 즉시 상장폐지 (예외: 회생·워크아웃 기업)
- ③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현행)**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적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① 심의단계 및 최대 개선기간 축소

	코스피		코스닥	
	이의신청 가능한 형식적 사유	실질심사 사유	이의신청 가능한 형식적 사유	실질심사 사유
심의단계	1심 → 동일	2심 → 동일	1심 → 동일	3심 → 2심
개선기간	최대 2년 → 1년	최대 4년 → 2년	최대 1년 → 동일	최대 2년 → 1.5년

- ② **형식적, 실질심사 사유 중복발생시 심사병행 (현행)**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 중단 → **(개선)** 중복발생시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시 최종 상장폐지

IV-4. 상장폐지 등 제도개선

2. 내용 (계속)

(3) 투자자 보호 보완

- ① **상장폐지 후 비상장거래 지원 (현행)** 상장폐지 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퇴출 확대시 투자자 우려 예상 → **(개선)** 금투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 개선
- ② **상장폐지 심사기간 중 공시 확대 (현행)**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가 부족하다는 평가 →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

3.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

- 2025년 1분기 거래소 세칙 개정, 2025년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 시행시기는 충분한 기업투자자 안내를 고려하여 2025년 하반기 이후로 하되, 절차개선 중 세칙 사항은 2025년 3월 중으로 시행

	추진 계획
요건	- 재무요건 강화: 2026. 1. 1.부터 단계별로 시행 - 감사의견 미달, 분할재상장 관련 요건강화: 2025. 7. 1. 시행
절차	- 세칙 사항인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 2025. 3월중 시행 - 규정 사항인 심의단계 축소: 2025. 7. 1. 시행
투자자 보호	- 비상장거래지원: 재무요건 강화에 맞춰 2026. 1. 1. 시행 - 공시확대: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2025. 7. 1. 시행

IV-5. IPO 제도개선 – IPO 허수성 기관 청약 규제

1. 개선 경위

- 일련의 제도개선에도, **단기차익 목적의 IPO 참여과열**이 해소되지 않아 공모가 산정에 왜곡 지속
 -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 목적으로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시 높은 가격 제시 → 수요예측 과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 확산
- 근본적으로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2. 내용

-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단기매도 지양, 기업 가치평가 기반의 신중한 수요예측 참여 유도
- ①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보다 적극적인 의무보유 확약 유도를 위한
-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수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
 -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하고 가점 확대
- ② **정책펀드 배정 혜택에 의무보유 확약 조건 부과**: (현행)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목적으로 공모수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 부여: 상장일에 매도하여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 증가 → (개선) 별도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과
- ③ **의무보유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대금 미납입 등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 부과 → (개선) 협회제재를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운영하여 실효성 제고

IV-5. IPO 제도개선 – IPO 허수성 기관 청약 규제

- (2)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시 비합리적인 참여과열을 야기하는 요소 개선
- 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 1) **사모펀드·일일업 위탁재산 참여요건 합리화**: (현행)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하는 등 과도한 측면 → (개선)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한 강화된 고유재산 참여 자격을 펀드·일일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2) **재간접펀드, 외국기관투자자**: (현행) 재간접펀드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해외페이퍼컴퍼니 이용 우회참여 의심사례 발견 등 문제 제기 → (개선) 재간접펀드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중복참여를 방지하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 참여를 제한
- ② **초일참여 가점 제도 합리화**: (현행) 수요예측 마지막 날 참여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선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일참여 가점제 도입 → (개선)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참여시점에 대한 전반적 가점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
- (3)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주관사의 “합리적 공모가”, “중장기 투자자 확보” 노력 유도
- ①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현행) 2022. 10.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서 도입방향 발표 후 지속 추진중 →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
- ②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현행) 2024. 5.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에서 공모주 배정 내부기준을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나 구체적 기준 미비 → (개선) 내부기준 마련시 필수 포함요소 등을 구체화

IV-5. IPO 제도개선 – IPO 허수성 기관 청약 규제

2. 내용 (계속)

- ③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관사는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 양도금지, 다만 코스닥 시장은 “6개월 이내 취득+가격과리율이 큰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를 적용 → **(개선)** 가격과리율 기준 축소(50%→30%), 의무보유 기간 확대(1개월→3개월)를 통해 코스닥 상장시 주관사 책임성 강화

3. 진행 상황

- 2025년 1분기 협회규정 개정, 2025년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025년 상반기 법안 발의 추진
-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4.1.부터, 내부 시스템 개편,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1.부터 시행
 - 4월 시행: 학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 7월 시행: 의무보유학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학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4. 평가

- IPO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V-6. BDC

1. BDC의 개념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를 의미함.
- 금융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이 BDC를 설립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후 이를 혁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 미국에서는 이미 BDC가 활성화 되어 있고, 배당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2. 도입 경위

-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BDC의 도입이 논의됨.

3. 내용 (금융위원회 개정안)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함.
- 최소 모집금액은 500억 원, 펀드 운용 기간은 5년 이상임.
- 투자금 공모 후 90일 이내에 펀드를 상장해야 함.
-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
- 투자금 보호를 위해 펀드의 10%는 국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함.

IV-6. BDC

4.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0.03.04.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에서 BDC 도입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2.05.27.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BDC 도입법을 발의하였으나,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에 실패
2024.07.19.	금융위원회 22대 국회에서 BDC 도입법 재발의 후 국회 계류 중
2024.08.16.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자본시장법 개정안 재발의) 재발의 후 국회 계류 중

5. 평가

-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며,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이 기대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안전성이 불투명한데 이에 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DC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V. 자본시장 – 공시, 불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 과징금: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과징금 등 감면제도 도입

2. CFD 규제: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사전공시 대상 내부자 및 거래의 범위 지정,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지정, 거래계획 철회 가능 사유 규정,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4.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5.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개선: 유사투자자문업 업무범위 정비 및 영업규제 신설, 진입 및 퇴출 규제 정비, 갱신신고 절차 마련

6. 공시제도개선: 정기보고서 및 전환사채 공시 강화, 공시 위반 시 과징금 정비

V-1. 불공정거래 과징금

1. 도입 경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23년 카카오, 영풍제지 등의 시세조종 의혹

2. 내용

(1)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①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개정)

- (개정 전)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만 가능
- (개정 후)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

② 과징금 부과절차 개선 (동법 시행령 제380조, 조사업무규정 [별표 2]·[별표 3] 개정)

- (개정 전) 검찰이 수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한 다음에야 제재가 가능하여 형사처벌 및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
- (개정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지 1년이 경과했거나 검찰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금융당국 조사만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V-1. 불공정거래 과징금

2. 내용 (계속)

(2)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442조의2 신설, 동법 시행령 제388조의3 및 [별표23] 신설)

-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후)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 유형별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자진신고자 과징금 등 감면제도 도입 (제448조의2 신설)

- (개정 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또는 3개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2. 9. 26.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3. 9. 21.	금융감독원, 법무부·대검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3. 7. 18.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
2024. 1. 19.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V-2. CFD 규제

*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란?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1. 도입 경위

-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Societe Generale)증권 발(發) CFD 주가 폭락 사태 발생
- 그간의 규제보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투자정보, 신용용자와의규제 차이,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필요성 제기
- CFD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규제차익 해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 내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내용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 (과거) 불투명한 CFD 정보공시로 투자자 판단에 제약이 있었음
- (개선) 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함
 - ①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 표기
 - ② 전체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공시
 - ③ 거래소 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 추가

V-2. CFD 규제

2. 내용 (계속)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과거) 장외파생상품으로서 CFD 거래는 실질이 유사한 신용용자와 달리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이 가능하였음
- (개선) 실질이 유사한 신용용자 등 제도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업권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책임을 강화함
 - ① 최소증거금을 규제 상시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제5-49조의2)
 - ② 신용용자와 유사하게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 (과거) 레버리지 규제 및 고난도 상품 요약 설명서교부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중이나,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개선)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권유를 금지함
 - ①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함(제4-20조)
 - ②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상향(제1-8조)

V-2. CFD 규제

2. 내용 (계속)

- ③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 신설(제5-49조의3)

[참고 :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 판단기준 관련 개선]

현 재			개 선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19.11월 이전)	개인전문투자자 (19.11월 이후)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 불가)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거래가능)
투자 상품	전체 금투자상품	저위험 제외 금투자상품	투자 상품	저위험 제외 금투자상품 (기준과 동일)	위험 금투자상품 한정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년도파생결합증권)
잔고 기준	신청전일 5억원	최근 5년내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잔고 기준	최근 5년내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기준과 동일)	최근 5년내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 ④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 금지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3. 5.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CFD 규제 보완방안」 발표
2023. 7. 19.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2023. 9.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적용
2023. 12. 1.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을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 12. 1.부터 100% 반영

V-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1. 도입 경위

-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22. 3.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으나, 한계가 있었음.
-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이후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

2. 내용

(1) 사전공시 대상 내부자의 범위 (법 제173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

- 사전공시의무자: 임원 또는 주요주주 등
- 제외: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2) 사전공시 대상 거래의 범위 (법 제173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 단차규정 제9조의3)

- 사전공시의무 면제: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②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V-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2. 내용 (계속)

- 사전공시의무 대상 제외: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외부 요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

(3)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의 절차 및 방법 (법 제173조의3 제1-2,3항, 시행령 제200조의3 제3-4,6항, 단차규정 제9조의4)

-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여 거래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 공시하여야 함
-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 보고 불가
- 보고한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를 하여야 하나,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음

(4)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철회 가능 사유 규정 (법 제173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 단차규정 제9조의6-제9조의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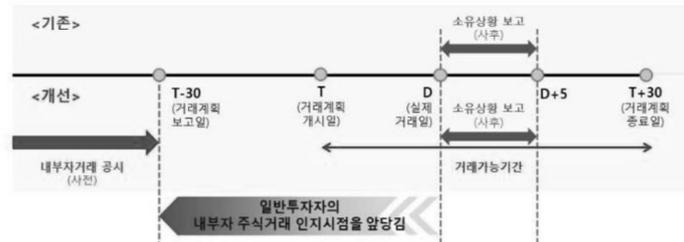
- ① 보고자의 사망·파산, ②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 계획 보고일 전일 증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③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④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

V-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5)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법 제429조 제5-6항, 시행령 제379조 제6-7항, 조사규정 개정안 별표 제2-3호)

-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시행령 등에서 과징금 차등 부과 규정 마련

< 자본시장법(§173의3)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거래* 관련 공시의무 변화 >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2. 9. 12.	금융위원회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발표
2024. 1. 23.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
2024. 7. 9.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차규정 및 조사규정 개정
2024. 7. 24.	자본시장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 개정안, 단차규정 및 조사규정 시행

V-4.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1. 도입 경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2. 내용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법 제426조의3제1·2항, 제426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377조의3제3항, 규정 제55조의3 등)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
- **예외항목**: ①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② 상속 또는 주식배당, ③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④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

V-4.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법 제426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77조의3제5항 등)

-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 계좌 지급정지 (법 제426조의2 제1·3·7항, 시행령 제377조의2 제7항·제10항 등)

- **계좌 지급정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 가능
- **해제 가능 사유**: ①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③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④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3.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22. 9. 26.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4. 10. 22.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
2024. 12. 27.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5. 4. 2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V-5.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개선

1. 도입 경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 발생
 - 피해사례 1: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1:1 개별상담 진행
 - 피해사례 2: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 내용

(1)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법 제7조 등)

-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

(2)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 신설 (법 제101조 제2항 제3호, 제101조의2, 제101조의3 등)

-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함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 적용

V-5.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개선

2. 내용 (계속)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3)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 (법 제101조 제5항 제14호, 제9항 제1호의2-제2호 등)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 확대
 -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 마련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3. 진행 상황

- 2024. 2. 1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4. 8. 13. 개정안 시행

V-6. 공시제도개선

<p>1. 개선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p>→ 「자본시장법」 개정</p> <p>2. 내용</p> <p>(1)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2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의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 <u>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u> <p>(2)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 강화 (제161조 제1항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환 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u>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사실을 공시</u>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로 인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u>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u>
--

V-6. 공시제도개선

<p>2. 내용 (계속)</p> <p>(3) 공시 위반시 과징금 정비</p> <p>①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 강화 (제429조 제3항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의 100분의 10, 20억 한도)로 규정해 <u>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 과소 부과되는 사례 발생</u> - (개정)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u>최소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u> <p>② 5% 보고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제429조 제4항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임에도 <u>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임</u> - (개정) 과징금 부과 한도를 <u>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u> <p>3.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p> <table border="1"> <thead> <tr> <th>날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22. 12.</td> <td>자본시장법 정부입법안 마련</td> </tr> <tr> <td>2025. 1. 21.</td> <td>자본시장법 개정</td> </tr> <tr> <td>~ 2025. 7. 22.</td> <td>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 제도 개선사항 안내</td> </tr> <tr> <td>2025. 7. 22.</td> <td>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td> </tr> </tbody> </table>	날짜	내용	2022. 12.	자본시장법 정부입법안 마련	2025. 1. 21.	자본시장법 개정	~ 2025. 7. 22.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 제도 개선사항 안내	2025. 7. 22.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날짜	내용									
2022. 12.	자본시장법 정부입법안 마련									
2025. 1. 21.	자본시장법 개정									
~ 2025. 7. 22.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 제도 개선사항 안내									
2025. 7. 22.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VI. 자본시장 - 인프라

1. ATS

3. 공매도 제도개선: 기관투자자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4. STO 및 전자증권

5. WGBI 편입 후속 외국인 투자자 국채 거래 관련 추가개선

6.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7.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VI-1. ATS

1. ATS의 개념

- 대체 거래소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자본시장법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다수의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8조의2 제5항)

2. 도입 경위

- 전산화된 매매를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
-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 투자자 거래편의 개선

3.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2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3월 4일 국내 최초 출범



'개미들 98% 몰린' 넥스트레이드...2주 성적표는?

금융증권 | 입력 2025-03-15 08:00:04 | 수정 2025-03-15 08:00:04 | 김수윤 기자 | 0개



거래대금 98%는 '개인'
대량-바스켓매매 개정 연기, 거래세 산정 오류 있기도
NXT "오류 개선-거래종목 확대할 것"
증권사들 발맞춰 수수료 ↓ 각종 이벤트 진행

날짜	내용
2025. 0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 03. 04.	넥스트레이드 출범

VI-1. ATS

(3)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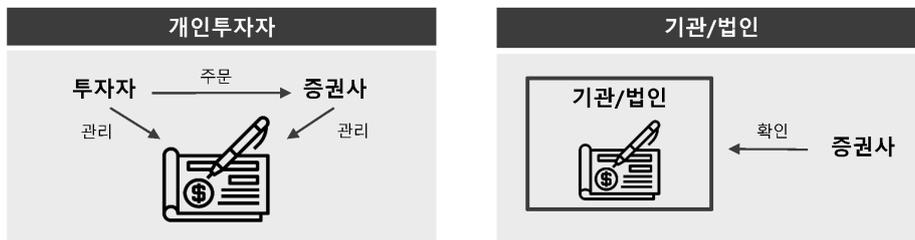
'2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ATS 관련 내용	
ETF, ETN 거래 허용 (제7조의3, 제24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ETF, ETN 거래 ATS 인가단위 신설 (별표1, 제19조의3)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 (제34조)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 (제78조)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VI-2. 공매도 제도개선

1. 기관투자자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1) 도입 경위

- 무차입 공매도 문제 심각 (*Naked short selling* 미리 주식/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



-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가 매도가능 잔고를 함께 관리하며 잔고 부족 시 매도주문이 불가능
- 기관/법인은 주문을 내는 증권사와 보관기관을 별도로 두고 매도가능 잔고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다수 → 내부통제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 반복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더라도 매도 물량 누락 일어남,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절차는 형식적인 수준)

VI-2. 공매도 제도개선

1. 기관투자자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계속)

(2) 내용

- **적용 대상:** 대규모 공매도 거래(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를 하거나 MM(시장조성자)·PI(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인 기관투자자
- 단,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는 시스템 구축 면제
- **시스템 운영 방식:**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을 통해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 무차입공매도 차단 Process >



(3) 기대 효과

-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 해소

VI-2. 공매도 제도개선

2.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제한)

(1) 도입 경위

- 기관 법인은 **대차거래**, 개인은 주로 **대주거래**를 통해 차입 공매도 → 대차와 대주의 차입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 지속
- **대차:** 주식차입자와 대역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것 / **대주:**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것

(2) 내용

- **상환기간:** '공매도 목적 대차'는 90일 단위로 연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
- **담보비율:** 대주 담보비율 '120%이상 → 105%이상'으로 인하 (대차와 동일한 수준)

<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

	상환기간		담보비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대차	기간 제약 없음 대역자 요구시 상환	90일 연장 (최대 12개월) 대역자 요구시 상환	현금 105% 주식 135% ↑	현금 105% 주식 135% ↑
대주	90일 연장 중도상환요구자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90일 연장 (최대 12개월) 중도상환요구자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현금 120% ↑ 주식 120% ↑	현금 105% 코스피200 120%* (기타 주식 대차 수준)

* : 개인에 대한 대주서비스가 기관 대차보다 더 유리한 부분

(3) 기대 효과

- 개인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

VI-2. 공매도 제도개선

3.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날짜	내용
2023. 11.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발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산화 TF 발족
2024. 3. ~ 2024. 6.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기관 및 외국인을 상대로 전산화 방안 설명 및 의견 청취
2024. 10.	기관투자자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5. 3. 31.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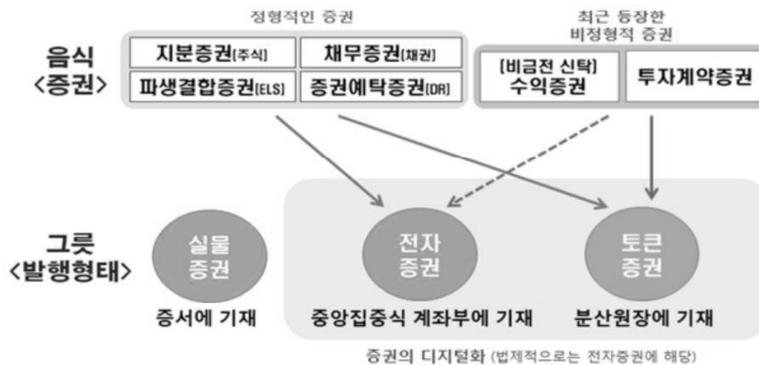
자본시장법 개정안 - 공매도 관련 내용

<신설>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3. STO 및 전자증권

1. STO의 개념

- 토큰증권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
-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 지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기존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효율화 가능



2. 도입 경위

-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비정형적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제도 마련

VI-3. STO 및 전자증권

3.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24. 10. 발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STO 제도화	
자본시장법 개정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1. 업무: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음 2. 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 확정 /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 마련 및 심사 3. 규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 적용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 금지) 4. 공시예외: 발행 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됨 5. 투자한도: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여 보호
전자증권법 개정	I. 토큰증권 발행 허용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 →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 II.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 발행 가능

VI-4. WGBI 편입 후속 외국인 투자자 국채 거래

1. WGBI의 개념 및 편입의 의의

-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 FTSE 세계국채지수
- 시가총액 및 투자가능성 기준에 따라 국가 적격성 결정
- 편입 효과: 국채금리 인하로 재정정책 수행 자금 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 수급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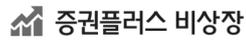
2. 외국인 국채 거래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 상황 및 내용

- '25.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개별 투자자 및 펀드별로 나누어 주문하지 않고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는 계좌
 - ① "주문"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국채통합매매계좌로, ② "결제"는 예약결제원에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로(246월 개시) 통합 처리 가능
-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 글로벌 판매모델: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유동성 제공 (예) A국 투자자에 대해 "외국은행 A국지점"이 영업·매매를 담당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 (=국내은행)"이 국채 유동성 제공

VI-5.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1.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개념

-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2.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규제 샌드박스 → 규제개선 요청 (24. 3)
 -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
 - 두나무(증권플러스), 서울거래(서울거래):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

3. 평가

-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 급감
- 비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추긴다는 비판

"혁신금융 키운다더니..." 비상장주식 플랫폼, 금융위 규제 강화에 존폐기로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재차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제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종목의 주식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 했다. 전문투자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매도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기업 동의가 이뤄진 일반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시세 조회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거래 등의 일반 종목의 수가 18개인 것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제 비바리퍼블리카, 리벨리온, 무신사의 장외 거래 가격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VI-6.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1. 조각투자의 개념 및 운영 방식

- 조각투자: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판매하는 것
- ①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



2. 진행 상황 및 개정 내용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 현재 운영상황: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先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가능
 - 자본시장법 개정안(24. 11, 국회 계류 중): 보다 일반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가능

3. 기대 효과

- 누적된 개정 수요 반영, 제도화로 투자중개업 및 수익증권 발행 감독 용이

VII. 결론 : 평가와 과제

1. 평가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근 2년 여간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법령개정 노력이 진행 중(총 25개).
- 진행상황을 보면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반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답보상태에 빠진 예가 다수 있음
- 자본시장법령 중 이해관계자(기득권)가 없거나 이해관계충돌이 없고, 시행령이나 고시 혹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회 입법을 통하거나 기득권 내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미함.
-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문제의 인식이나 아젠다 세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실제 추진이나 작동에 문제

VII. 결론 : 평가와 과제

2. 과제

- 자본시장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진행 중(12개)이거나 완료된 것(13개)이 이미 25개에 달함.
- 따라서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1)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도화 하고, (2) 법/제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자본시장선진화에 대해 자본시장법령만으로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여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음. 제도의 작동은 “당근과 채찍” 모두가 필요한데 자본시장법령은 대부분 채찍에 해당.
-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만이 아닌 전 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

【토론】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안 상 희*

* 대신경제연구소 이사

【토론】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 유 성*

1. 들어가며

최근 자본시장법 분야 개정의 입법취지, 현황, 향후 과제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전 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정부와 국회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2. 이사 충실의무의 적용가능성(유상증자 관련, 11면)

비합리적인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 등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감독원 2025. 2. 26.자 보도자료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큰 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는 유상증자에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 여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는 기본적으로 선관주의의무의 영역일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기업집단 내에 속한 이사의 경우 유상증자 자금 및 기존 여유자금의 용처,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작은 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담론이 유상증자에 적용될 여지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을 청합니다.

3. 일반주주 출출 논의 관련 (21면)

1만대1의 주식병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8다283315)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대법판결에서는 “주식병합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고, 주식병합의 경우에 회사가 단주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443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2049630 판결¹⁾)로 보다 명확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²⁾ 주식병합 시 단주처리에 관한 법원의 허가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의 실질화를 통해 상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 이에 관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4.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상장 폐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34면)

대한민국 경제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현재 상장기업 현황(코스피 849사, 코스닥 약 1792사, 코넥스 120사³⁾)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실한 기업이 상장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관련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투자자보호 문제가 부적절한 기업 퇴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K-OTC / 비상장플랫폼을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행정소송의 판단기준(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청의 재량권 통제라는 관점)으로 엄격한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판례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의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1) 대법원 2024. 10. 8.자 2024다24987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2) 상세한 내용은 노혁준, “2024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528호(2025), 188-191면.

3) 2025. 4. 21.자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주요통계 [42001] 종합정보(일)

제 3 세 셴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
— 상사법원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사회: 유 진 희

발표: 김 효 정

토론: 주 강 원 / 김 유 돈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

— 상사법원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김 효 정*

- I. 서론
- II. 상사법원의 의의, 현황 및 도입 필요성
- III. 상사법원의 도입방안
- IV. 결론

I. 서론

최근 상사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해외의 상사실무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기법이 우리나라 실무에도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나, 해외의 상사실무 및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¹⁾ 국경을 넘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상사사건의 대규모화·고도화·국제화 등에 우리나라 법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의 강화가 중요하다. 2013년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는 재판 전문화의 필요성을 확정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는 ① 법률요건과 전문지식의 복잡성, ② 부가적인 서비스나 별도 절차의 필요성, ③ 해당 유형 사건의 규모, ④ 외부의 전문화에 대한 요청이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²⁾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사사건의 해결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고도화되었고, 국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송옥렬),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2023, 97-98면.

2) Dr. Heike Gramckow and Barry Walsh, Developing Specialized Court Services: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The World Bank, 2013, p. 16,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688441468335989050/pdf/819460WP0Devel00Box379851B00PUBLIC0.pdf> 참조 (2025. 4. 21. 최종 확인); 윤찬영,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 전문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1, 64면.

제적인 상사사건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나 별도의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성장 및 국제적 거래의 증가로 관련 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원 외부에서 상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전문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개별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② 상사전담재판부 또는 전문법관을 활용하는 방안, ③ 독립된 상사법원(상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³⁾ 우리나라 법원은 일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상사·기업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3년 한 해 동안 상사·기업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약 1,641건에 이른다.⁴⁾ 그러나 상사·기업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고 해서 상사사건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사·기업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전담사건의 비율이 50% 미만이고,⁵⁾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법관이 상사·기업전담재판부에 장기간 근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사·기업전담재판부의 운영’보다 강화된 제도적·조직적 차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독립된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사법원의 도입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사법원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외국의 상사법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상사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의 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할 경우 설립형태, 재판권 및 관할, 재판부 구성과 소속법관의 전문성, 절차, 장소 등에 관하여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송옥렬), 앞의 용역보고서, 95면.

4) 2024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12-236면의 “각급 법원 전문재판부 운영 및 2023년도 사건처리 현황” 표의 상사전담재판부 및 기업전담재판부의 사건처리 수를 합산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전담재판부(제12-1·12-2·12-3민사부, 제14-1·14-2·14-3민사부, 제16·18민사부)가 처리한 472건,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전담재판부[제22민사부, 제31민사부, 제30민사부, 제16민사부(2023. 2. 20. 폐부), 제29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203단독, 제911·912·913민사단독, 민사68단독]가 처리한 755건,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조세전담재판부(제21민사부, 제17민사부)가 처리한 기업사건 234건, ④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사전담재판부(제14민사부)가 처리한 32건, ⑤ 의정부지방법원 상사전담재판부(제11민사부)가 처리한 12건, ⑥ 인천지방법원 국제거래·상사전담재판부(제14민사부, 민사5단독, 제11민사부, 제13민사부)가 처리한 39건, ⑦ 수원지방법원 재개발·상사·노동전담재판부(제15민사부, 제17민사부)가 처리한 상사사건 95건, ⑧ 부산지방법원 환경·기업전담재판부(제9민사부, 제11민사부)가 처리한 기업사건 2건을 합산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전담재판부(2020. 2. 기준 4개 재판부)의 전담사건 비율은 32-44%에 불과하다. 윤찬영, 앞의 보고서, 88면.

II. 상사법원의 의의, 현황 및 도입 필요성

1. 상사법원의 의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은 ‘상사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특정 국가의 사법체계 내에서 상사사건에 관한 재판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화된 법원을 의미한다.⁶⁾

상사법원은 조직상 반드시 독립되어 있을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⁷⁾ 관할에 따라 독립된 전문법원의 형태(전문법원형)로 설립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사법원 내 전문재판부의 형태(전문재판부형)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전문재판부형에 해당되는 상사법원으로는 미국 상사법원, 영국 상사법원⁸⁾ 등이 있다.

한편 상사법원은 국내상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관할도 함께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네덜란드 국제상사법원(NCC)과 같이 그 관할이 국제상사사건에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

2. 상사법원의 현황

2.1. 미국 상사법원

미국은 1993년에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 상사법원을 도입한 이래 다수의 주들이 상사법원을 도입하였고, 2024년 유타주와 텍사스주가 상사법원을 도입함에 따라 2025년 현재 총 27개 주⁹⁾에서 상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델라웨어주가 일반법원(Superior Court) 전담재판부로

6) Mary Mitsi, “Commercial Courts: Exploring Key Models”, Asian Development Bank, 2022, p. 10.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송옥렬), 앞의 보고서, 120면에서는 상사법원은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구축하고 상사·기업 관련 분쟁만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을 의미”한다고 하나, 외국 상사법원 중 상당수가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르면 외국 상사법원 중 상당수가 상사법원의 범주에서 배제될 것이다.

8) 영국 상사법원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산하의 국왕재판부(King’s Bench Division)의 일부를 구성한다.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Courts of the King’s Bench Division’,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kings-bench-division/courts-of-the-kings-bench-division/> (2025. 4. 21. 최종 확인).

9) 애리조나주, 델라웨어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와이오밍주이다. ABA,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urts 2024,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4-march/recent-developments-business-courts-2024/ (2025. 4. 21. 최종 확인); Benjamin D. Perkins & Julianne P. Blanch, “Utah businesses get their own court”, Utah Business (April 3, 2023), <https://www.utahbusiness.com/utah-businesses-get-their-own-court/>; Stephen E. Fox, Bill Mateja, Amanda L. Cottrell & Jonathan E. Clark, “Texas Revolution: State Legislature Creates New Business Court System to Handle Significant Commercial Disputes”, Nat’l L. Rev. (July 28, 2023),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texas-revolution-state-legislature-creates-new-business-court-system-to-handle> (2025. 4. 21. 최종 확인).

복잡상사소송재판부(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CCLD)를 설치하였고,¹⁰⁾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미네소타주, 오리건주 등도 복잡상사소송재판부를 도입하였다.¹¹⁾ 미국의 상사법원은 각 주별로 상사법원의 명칭, 조직 및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상사사건을 중심으로 또는 상사사건만을 심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¹²⁾

미국 각 주의 상사법원은 전문법원형이 아니라 전문재판부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상사전담재판부와 유사하다. 예컨대 뉴욕주의 상사재판부(New York Commercial Division)는 뉴욕주 1심 법원(Supreme Court) 소속 재판부이다. 그러나 미국 상사법원의 경우 전문법관이 계속 근무하고 독자적인 재판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¹³⁾

2.2. 영국 상사법원

영국¹⁴⁾ 상사법원은 영국 고급법원(High Court)¹⁵⁾의 국왕좌부(King's Bench Division)에 속해 있다.¹⁶⁾ 영국 상사법원의 업무는 상사사건, 해사사건, 중재사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¹⁷⁾

영국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95년 설립되었다.¹⁸⁾ 영국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상사법원의 절차를 최대한 유연하게 설계하였고, 소송 절차 및 관리 측면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실무 지침 및 가이드를 실무에 사용한다. 영국 상사법원은 평균 재판 기간, 판사의 전문성, 정교한 사건관리 기능, 전자소송 지원 등의 측면에서 국제상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매력적인 분쟁해결장소로 인식되고 있다.¹⁹⁾

10) John F. Coyle, *Business Courts and Interstate Competition*, 53 *Wm. & Mary L. Rev.* 1915, 1925-1926 (2012).

11) ABA,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urts 2024*,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4-march/recent-developments-business-courts-2024/ (2025. 4. 21. 최종 확인)

12) Coyle, *op. cit.*, p. 1922 (2012); 고은정, “한국의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0호* (2022), 205면.

13) Tyler Moorhead, “Business Court: Their Advantage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Indiana’s Pursuit of Its Own”, 50 *Indiana Law Review* 397, 397 (201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송옥렬), 앞의 보고서, 123면.

14) 영연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sland)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되는데, 그 중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1707년 및 1900년 연방법(the Act of Union)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의미한다.

15) 영국 고급법원(High Court)은 주요한 1심의 민사 및 가사사건,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치안법원 형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관할위반에 기한 항소 사건을 담당한다.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high-court/> (2025. 4. 21. 최종 확인).

16)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kings-bench-division/courts-of-the-kings-bench-division/>(2025. 4. 21. 최종 확인).

17) The Commercial Court of England and Wales, ‘The Work of the Commercial Court’, <https://www.commercialcourt.london/work> (2025. 4. 21. 최종 확인).

18) 고은정, 앞의 논문, 210면.

19) Mitsi, *op. cit.*, p. 61.

2.3. 프랑스 상사법원

프랑스는 2025년 현재 전국에 134개의 상사법원을 두고 있고 있다.²⁰⁾ 프랑스 상사법원은 16세기(1563년) 왕실 명령에 따라 설립된 파리상인법원(Jurisdiction Consulaire de Paris)을 계승한 파리상사법원(Le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에서 유래했다.²¹⁾ 파리상사법원은 172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6,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²²⁾ 알자스-모젤 지역에는 사법재판소 상사재판부(Chambre Commerciale du Tribunal Judiciaire)를 두고 있다. 항소법원(Cour d'Appel)은 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있고,²³⁾ 대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도 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다.²⁴⁾

한편 프랑스 상사법원 중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은 파리상사법원 및 파리항소법원, 낭테르 상사법원, 베르사유 항소법원이다.²⁵⁾ 파리상사법원 국제재판부는 1995년에 설치되었고, 파리항소법원 국제재판부는 2018년에 설치되었다.²⁶⁾ 파리상소법원과 파리항소법원의 국제재판부를 총칭하여 ‘파리 국제상사법원’(Chambre Commerciale Internationale de la Cour d'appel de Paris, ICCP-CA)이라고 한다.²⁷⁾

프랑스 상사법원은 소송비용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투명하며 숙련된 법원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²⁸⁾ 프랑스 상사법원의 경우 80% 이상의 사건이 변론 이후 10주 이내에 처리된다.²⁹⁾ 국제상거래 당사자들도 프랑스 상사법원을 자주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파리 국제상사법원은 영어의 사용과 유연한 절차진행으로 인하여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선호한다.³⁰⁾

프랑스 상사법원의 항소율은 13%를 약간 넘는데, 이는 지방법원보다 항소율이 낮고 노동법원

20) Le tribunal de Commerce, <https://tribunauxdecommerce.fr/linstitution/le-tribunal-de-commerce/> (2025. 4. 21. 최종 확인).

21)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L'histoire Des Tribunaux De Commerce, <https://www.tribunal-decommerce-de-paris.fr/fr/histoire-des-tribunaux-de-commerce> (2025. 4. 21. 최종 확인).

22) Mitsi, *op. cit.*, p. 14.

23) Vie Publique, “Comment fonctionne une cour d'appel?”, <https://www.vie-publique.fr/fiches/268757-comment-fonctionne-une-cour-dappel> (2025. 4. 21. 최종 확인).

24) Cour de Cassation, Les six chambres de la Cour de cassation, <https://www.courdecassation.fr/lacour/lorganisation-de-la-cour-de-cassation/les-six-chambres-de-la-cour-de-cassation> (2025. 4. 21. 최종 확인).

25) 위 국제상사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의정서(protocol)에 따라 설립되었다. Mitsi, *op. cit.*, p. 17.

26) *Ibid.*, p. 15.

27) Alexandre Biar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in France: Innovation without Revolution?”, 12(1) Erasmus Law Review 24, 24 (2019).

28) Anne-Claire Hans, Jean-Luc Larribau & Julie Spinelli, “Litigation: France”, GAR,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insight/know-how/litigation/report/france> (2025. 4. 21. 최종 확인).

29) Sophie Bridier, “Paris Place de Droit cherche à se faire un nom”, Direction Juridique (2016. 6. 15.), <http://www.actuel-direction-juridique.fr/content/paris-place-de-droit-cherche-se-faire-un-nom> (2025. 4. 21. 최종 확인).

30) Anne-Claire Hans, Jean-Luc Larribau & Julie Spinelli, “Litigation: France”, GAR,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insight/know-how/litigation/report/france> (2025. 4. 21. 최종 확인).

사건의 항소율의 절반 수준이다.³¹⁾ 또한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파리상사법원의 경우 항소심 파기율은 3% 미만이다.³²⁾

2.4. 독일 상사법원

독일의 일부 지방법원(Landgericht)은 상사재판부(Kammer für Handelssachen)를 두고 있다.³³⁾ 상사재판부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으로는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만하임,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등의 각 지방법원이 있다.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한 지방법원으로는 베를린, 본, 브레멘, 쾰른,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만하임, 슈투트가르트의 각 지방법원이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절차 규칙이 적용되나, 특별한 절차규칙의 내용 및 영어로 진행되는 절차의 범위는 법원마다 다르다.³⁴⁾ 국제상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재판할 권한을 가지나, 국제 상사법의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상사재판부도 있다. 예컨대 베를린에는 2개의 국제상사재판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상사분쟁, 불공정거래행위 및 상표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건설법 및 일반 민법 관련 분쟁을 담당한다.³⁵⁾ 한편 특정 국제상사분쟁은 지방법원의 국제상사재판부가 아닌 특별상사재판부에서 심판한다. 예컨대 프랑크푸르트 특별상사재판부는 경쟁 및 지식재산권 분쟁, 뒤셀도르프 특별상사재판부는 인수합병 분쟁에 관하여 심판한다.³⁶⁾

그러나 최근 독일 상사법원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25. 4. 1.부터 시행된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에 따라 독일의 여러 연방 주에 위치한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e) 내에 상사법원(Commercial Courts)을 신설하게 되었고, 위 법원들은 법 시행일인 2025. 4. 1. 이후 설립될 예정이다.³⁷⁾ 위와 같은 변화는 독일 법원의 전반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 M&A 종결 후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 독일 법원에서 영어의 제한적 사용 등에 따라 독일 상사법원이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³⁸⁾ 새로운 독일 상사법원은 ① 법원 언어로 영어 사용, ② 대규모(국제) 상사 분쟁을 위한 전문 사법기관의 설립, ③ 소송절차 중 영업 비밀 보호 강화 등의

31) Nicole Stolowy, How France’s Commercial Courts Stay Relevant Through the Centuries, <https://www.hcc.edu/en/knowledge/articles/how-france-s-commercial-courts-stay-relevant-through-centuries> (2025. 4. 21. 최종 확인).

32) Mitsi, *op. cit.*, p. 26.

33) *Ibid.*, p. 27.

34) Mitsi, *op. cit.*, p. 29.

35) International Chambers at the Regional Court of Berlin, <https://www.berlin.de/gerichte/landgericht/das-gericht/zustaendigkeiten/internationalekammern/artikel.1039251.en.php> (2025. 4. 21. 최종 확인).

36) Mitsi, *op. cit.*, p. 30.

37) 베네딕트 카네코(Benedikt Kaneko), 비외른 에버트(Björn Ebert), 미하엘 부리안(Michael Burian), “독일 상사법원 신설이 국제 소송에 미칠 영향”, 법률신문 (2025. 3. 5.).

38) 위의 기사; Giesela Rühl & Nicolas Dewitt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Made in Germany’: Attractive Alternative for Big Business?”, 44 Pittsburg Journal of Law & Commerce 1, 12 (2025).

특징을 지닌다.³⁹⁾

2.5.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싱가포르 고등법원 전문부 소속재판부로서 국제적이고 상사적인 성격의 사건을 심리한다.⁴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싱가포르가 국제분쟁 조정의 허브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어 2015년 개원하였다.⁴¹⁾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적인 상사사건만을 담당한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국내 법원에 비해 국제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외국인 판사를 임용하고, 외국 법률 대리인의 선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증거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연한 증거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⁴²⁾

2.6.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2019년 개원한 네덜란드 상사법원(NCC)은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상사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사법부의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⁴³⁾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국제적인 상사사건만을 심판한다.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전문재판부(special chamber)로서(NCC절차규칙 제1.1.1조) NCC 1심법원(NCC District Court)과 NCC 항소법원(NCC Court of Appeal)로 구성된다. NCC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네덜란드 대법원으로 할 수 있다.⁴⁴⁾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상세한 절차규칙을 마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상사법원 예산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건 유치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⁴⁵⁾ 그러나 NCC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는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나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아 불편하고, 지방법원보다 하위심급인 구법원(kantonrechter) 차원에서는 네덜란드 상사법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⁴⁶⁾

³⁹⁾ Rühl/Dewitte, *op. cit.*, 12.

⁴⁰⁾ ‘Role and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Singapore Courts, <https://www.judiciary.gov.sg/who-we-are/rolestructure-supreme-court/role> (2025. 4. 21. 최종 확인).

⁴¹⁾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ttp://www.sicc.gov.sg/About.aspx?id=21> (2025. 4. 21. 최종 확인).

⁴²⁾ Mitsi, *op. cit.*, pp. 76-77.

⁴³⁾ <http://netherlands-commercial-court.com> (2025. 4. 21. 최종 확인); 김정환, 앞의 보고서, 135면.

⁴⁴⁾ About the NCC,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whoare-we.aspx> (2025. 4. 21. 최종 확인); 고은정, 앞의 논문, 217면.

⁴⁵⁾ 김정환, 앞의 보고서, 156면.

⁴⁶⁾ Harriët Schelhaas, “The Brand New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A Positive Development?” in Xandra Kramer & John Sorabji (Eds.), *International Business Courts – A European and Global Perspective* 47, 57-58 (2019).

2.7. 기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각 상사법원)

2015년 인도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2015)에서 일반 민사관할권을 가진 고등법원에 상사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델리, 봄베이, 캘커타, 마드라스, 히마찰프라데시에 상사재판부가 설립되었다.⁴⁷⁾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상사법원이 하나뿐이며, 1996년에 설립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 가우텡 지원의 관할에 속하고, 가우텡 주⁴⁸⁾에 위치해 있다.⁴⁹⁾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은 1996년에 개원한 이래 이용율이 저조해자 요하네스버그의 가우텡 지방 고등법원은 2018년 상사법원 실무 지침(2018 Commercial Court Practice Directive)을 발표하여 시행하였다.⁵⁰⁾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의 설립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촉진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화된 법정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¹⁾

3. 상사법원의 도입 필요성

상사사건이 대규모화·고도화·국제화됨에 따라 상사사건에서의 전문성 제고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사·기업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사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사·기업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전담사건의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점,⁵²⁾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법관이 상사·기업전담재판부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사·기업전담재판부의 운영만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이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전문성 제고의 수단으로 상사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사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독립적인 전문법원의 형태로 상사법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문성이 제고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⁵³⁾ 이러한 견해는 상사전문법원의 설치보다는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47) The Commercial Courts, Commercial Division and Commercial Appellate Division of High Courts Act 2015, https://prsindia.org/files/bills_acts/acts_parliament/2015/commercial-courts-act,-2015.pdf (2025. 4. 21. 최종 확인).

48) 가우텡 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자 주요 경제 중심지로서 요하네스버그, 츠와네, 에쿠르홀레니 등의 도시를 포함한다. Mitsi, *op. cit.*, p. 47.

49) *Ibid.*

50) Tanya Pollak and Nikhil Lawton-Misra, Commercial Court Practice Directive, Available at <https://www.golegal.co.za/commercial-court-practice-directive/> (2025. 4. 21. 최종 확인).

51) Mitsi, *op. cit.*, p. 47.

52)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전담재판부(2020. 2. 기준 4개 재판부)의 전담사건 비율은 32-44%에 불과하다. 윤찬영, 앞의 보고서, 88면.

5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송옥렬), 앞의 용역보고서, 129면.

강조하면서 외국의 상사법원의 설립형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사법원이 재판부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전담재판부의 전담사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내부적으로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⁵⁴⁾ 그러나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의 형태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⁵⁵⁾

재판전문화의 모델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2013년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 보고서는 재판전문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로서 ① 법률요건과 전문지식의 복잡성, ② 부가적인 서비스나 별도 절차의 필요성, ③ 해당 유형 사건의 규모, ④ 외부의 전문화에 대한 요청이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⁵⁶⁾ 위 네 가지 요소가 높게 판단될수록 재판전문화의 필요성이 강하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전문화의 필요성의 강도에 따라 ‘개별 법관의 전문화 → 개별 재판부의 전문화 → 총괄 전문재판부의 구성 → 특수법원으로서의 전문법원 설립(일원적 사법제도) → 예외법원으로서의 전문법원 설립(이원적 사법제도)’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더 포괄적인 재판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사사건에 위 네 가지 요소를 대입시켜 보면, 재판전문화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상사사건에 해결되는 전문지식의 고도화, 국제상사사건을 위한 별도 절차 마련의 필요성, 상사분쟁의 대규모화, 법원 외부의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사전담재판부는 위 보고서가 제시한 재판전문화 단계 중에서는 ‘총괄 전문재판부’에 해당된다. 총괄 전문재판부의 전담사건 비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전문재판부의 운영방안을 달리 함으로써 전문성을 현재보다 강화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전문재판부의 운영방안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재판부와 전문법원의 핵심적인 차이는 조직의 독립성인데, 인적·물적 조직이 독립되는 것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예컨대 별도의 절차 운영이나 새로운 제도나 법률서비스의 도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상사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사법원 도입시 국제상사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할 경우,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상사법원을 전문법원으로 도입할 경우 사법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우리나라가 분쟁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법정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⁵⁷⁾ 국제상사법원은 중재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⁵⁸⁾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언급된다.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상사중재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보다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

54) 위의 보고서.

55) 고은정, 앞의 논문, 223면.

56) Gramckow/Walsh, *op. cit.*, p. 16; 윤찬영, 앞의 보고서, 64면.

57) 김정환,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182면.

58) Pamela K. Bookman, “The Adjudication Business”, 44 *Yale J. Int’l L.* 1, 1 (2020).

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중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⁵⁹⁾

다만 독립된 전문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는 특정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의 배치가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⁶⁰⁾ 사건 수가 충분한지 여부는 이미 설치된 전문법원들의 사건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문법원으로 1개의 특허법원, 8개의 가정법원, 1개의 행정법원, 3개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상사법원과 마찬가지로 해사전문법원도 재판의 수요가 독립된 전문법원을 설립할 만큼 충분한지 문제되고 있는데, 2023년 개최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법원 별 연 사건처리 건수가 가정법원 4만 8,800건, 행정법원 3만 3,129건, 특허법원 595건, 회생법원 1,239건이고,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5개 해사전담재판부의 사건처리 건수가 784건인 점에서 해사재판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⁶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상사·기업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약 1,641건이다.⁶²⁾ 상사·기업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 수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처리한 사건 수에는 현저히 못 미치지만, 특허법원, 회생법원보다는 사건 수가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만큼 충분한 재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도입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수요 외에도 추가적으로 ① 상사사건에 대한 특별한 처리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 법원 이용자 및 기타 관련 이익집단의 견해, ② 주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언급된 전문화 필요성 및 심화분석(즉, 사건의 양, 법률적 복잡성,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 간이한 절차의 필요성, 특별한 취급이나 서비스의 필요성) 또는 관할상의 특별한 중요성에 따른 전문화 근거, ③ 장기적인 추세와 필요성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특히 고려한 이점, ④ 최적으로 선호되는 전문화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투자 및 실행 조건과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⁶³⁾ 이하에서는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도입하는 전제에서 상사법원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9) 김정환, 앞의 보고서, 190면.

60) Gramckow/Walsh, *op. cit.*, p. 16; p. 16; 윤찬영, 앞의 보고서, 63면. 만약 특정 유형을 전담하는 판사의 배치가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사건이 있다면, 독립된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아우르는 총괄부(division)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한다. 한편 잠재적인 업무부담의 규모나 장기적 필요성이 불명확하다면, 소속 법관 숫자 조절이 가능한 전문재판부(special bench)가 선호된다. 필요한 담당 법관의 숫자를 명확히 가늠할 수 없다면 전문분야 사건 접수 시에 개별 법관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다.

61) “해사법원 입법추진 또 호지부지”, 현대해상 (2024. 5. 16.),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3> (2025. 4. 21. 최종 확인).

62) 2024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12-236면의 “각급 법원 전문재판부 운영 및 2023년도 사건처리 현황” 표의 상사전담재판부 및 기업전담재판부의 사건처리 수 참조.

63) Gramckow/Walsh, *op. cit.*, p. 17; 윤찬영, 앞의 보고서, 65면.

Ⅲ. 상사법원의 도입방안

1. 설립형태

상사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의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제상사법원 및 해사법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사법원의 수는 몇 개로 하고,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정사항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사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국제상사법원 및 해사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는, ① 상사법원 내에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상사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해사법원은 별도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하는 방안, ② 상사법원은 국내상사사건만을 다루도록 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⁶⁴⁾을 별도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③ 상사법원, 국제상사법원, 해사법원을 모두 별개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해사법원이 심판하는 해사사건은 선박에 의하여 바다에서 전개되는 항행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으로서 해사민사, 해사형사, 해사행정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 해사사건도 국제상사사건과 같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나, 국제성이 있다고 하여 상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해사행정, 해사형사 사건 등을 심판하는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묶어 하나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상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하나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나 네덜란드 상사법원과 같이 국제상사법원을 별도로 설치한 예가 있으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사법원에서 국내상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모두 심판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전문법원으로서 사건 수의 충분한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사법원에서 국내상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모두 심판하도록 하는 위 ① 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상사법원의 수는 하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설치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전문법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과 함께 소송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3개의 회생법원이 연간 1,239건을 처리한 점과 더불어 2023년 상사·기업전담재판부가 처리한 사건 수가 1,641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사법원도 3개를 설치하더라도 각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한 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3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만 국제상사사건은 사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립 초기에는 사건 수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국제적인

64)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118호),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이다.

성격에 맞는 물적 시설을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사법원 내 설치하는 국제상사재판부는 상사법원 3개 모두가 아닌 1개의 법원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상사법원의 설립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설립 위치는 사건 수 확보와 법원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사법원 본원은 서울, 지원은 인천 및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상사법원 내 국제상사재판부를 서울 본원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사법원 인천지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⁶⁵⁾ 국제상사법원의 경우 외국인 당사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외국과의 교역물량의 상당부분이 인천항을 통해서 이동하는 점 등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원조직법 제3조의 ‘법원의 종류’를 7종류에서 8종류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제8호로 ‘상사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설치) 제2조에 ‘상사법원’을 삽입하고, 제4조(관할구역) 제9호로 상사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11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7. (생략)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8종류로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u>상사법원</u>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략)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생략) 1.-8. (생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u>상사법원</u>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u>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u>

65) 상사법원 내 국제상사재판부를 인천지원에 설치하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정환, 앞의 보고서, 204-205면은 국제상사법원 중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과 카타르 금융센터법원이 특정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있는 사건 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단계적으로 해당 구역 내지 국가의 기업이 일방당사자가 된 국제상사사건과 제3국 기업 사이의 국제상사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게 함으로 단계적 사건 수 확보와 국제상사법원의 처리 능력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상사법원 도입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재판권 및 관할

2.1. 외국 상사법원의 경우

2.1.1. 미국 상사법원

미국 상사법원의 경우 상사법원의 유형, 즉 순수한 형태의 상사법원(pure commercial court)인지 복잡상사법원(complex commercial court)인지에 따라 관할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⁶⁶⁾

순수한 형태의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을 심판한다. 뉴욕주 상사재판부(New York Commercial Division)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① 계약 위반 또는 수탁 의무 위반, 사기, 허위 진술, 사업상 불법행위(예컨대 불공정 경쟁), 또는 법령·관습법 위반, ②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는 거래(개별 협동조합 또는 콘도미니엄 관련 거래 제외) ③ 상업용 부동산 관련 거래(엘로스톤 금지명령⁶⁷⁾ 포함, 임대료 지급만을 위한 소송 제외), ④ 주주대표소송, ⑤ 상사집단소송, ⑥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거래, ⑦ 기업 조직의 내부 문제, ⑧ 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과실 및 상업 문제 대리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과실, ⑨ 환경보험, ⑩ 상사보험, ⑪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및 합작투자의 해산, ⑫ 앞서 열거된 상사사건과 관련한 중재 중지 또는 강제 신청, 중재 판정 및 관련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거부 신청 등이다.⁶⁸⁾ 그러나 상사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다른 영역은 배제한다. 뉴욕주 상사재판부의 경우, 전문가보수 청구소송, 개인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사건, 임대인·임차인 문제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 분쟁 및 임대료 지급만을 포함하는 상업용 부동산 분쟁,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건물 내 개별 세대와 관련된 주택 개량 계약, 판결 집행을 위한 소송, 비상업용 보험 관련 소송, 변호사 과실 소송 등은 관할에서 배제된다.⁶⁹⁾

일부 주의 경우에는 상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저 청구금액 기준(monetary threshold)을 초과

66) 복잡민사법원(complex civil courts)은 내용이 복잡한 민사사건을 다루지만 당사자들 중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상사법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Moorhead, *op. cit.*, p. 407 참조. 복잡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환경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집단소송 등이 있다. *Ibid.*; Gary W. Jackson, “Do Business Courts Really Mean Business? Many Nonbusiness Cases Are Being Transferred to Courts That Were Created to Streamline Disputes Between Companies. This Trend Weakens Consumer Protection”, TRIAL (June 2006), http://www.thefreelibrary.com/_/print/PrintArticle.aspx?id=147568319(2025. 4. 21. 최종 확인).

67) 엘로스톤 금지명령(Yellowstone injunctions) 뉴욕 상업 임차인(commercial tenants)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불이행 통지를 받았을 때 임대 계약 해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 David A. Gallo & Associates LLP, Protecting Your Leasehold: Understanding Yellowstone Injunctions in New York, https://dagallp.com/daga/EN/blog.php?pageurl=Understanding_Yellowstone_Injunctions_in_New_York#:~:text=A%20Yellowstone%20injunction%20is%20a%20court%20order,necessary%20without%20risking%20forfeiture%20of%20the%20lease (2025. 4. 21. 최종 확인).

68) Uniform Rules for N.Y. State Trial Courts, Section 202.70(b),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2025. 4. 21. 최종 확인).

69) *Ibid.*

하여야 상사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카운티별로 최저 청구금액 기준이 다른데, 뉴욕 카운티 상사재판부는 청구금액이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7억 1,090만 원) 이상이어야 제소가 가능하다.⁷⁰⁾ 다만 뉴욕주 상사재판부 관할사건 중 주주대표소송, 상사집단소송, 법인 등의 해산 사건에는 최저 청구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⁷¹⁾ 최저 청구금액 산정시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이자, 비용,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⁷²⁾ 형평적 구제(equitable relief)나 확인적 구제(declaratory relief)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청구가 상사재판부 관할에 속하기 위한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제되나, 이에 관하여 뉴욕주 상사재판부는 최근 규칙을 개정(2025. 1. 개정, 2025. 3. 31. 시행)함으로써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형평적 또는 확인적 구제를 청구할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의 가치, 보호하려는 권리의 가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손실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이 최저 청구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⁷³⁾

복잡상사법원(complex commercial courts)은 상사사건 중 내용이 복잡한 사건만 관할로 한다. 델라웨어주 일반법원의 복합상사소송재판부(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CCLD)는 소송목적이 값이 미화 1백만 달러(한화 약 14억 2,180만 원) 이상인 사건, 전속적 관할합의 또는 그러한 합의에 따른 판결에 관한 사건, 복합상사소송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법원장이 판단한 사건을 관할한다.⁷⁴⁾

한편 미국 상사법원에서는 국제적인 상사사건도 심리한다. 뉴욕주 상사재판부는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에게 선호되는 상사법원 중 하나이다.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장으로 뉴욕을 자주 선택하고,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욕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 일반채무법(New York General Obligation Law, GOL)은 미화 최소 25만 달러 이상의 상사분쟁 당사자가 해당 상사계약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권리를 명시한다(GOL 제§5-1401조).

70) 뉴욕주 카운티별 최저 청구금액은 알바니 미화 5만 달러, 브롱스 미화 7만 5천 달러, 제8사법구역 미화 10만 달러, 킹스 미화 15만 달러, 나소 미화 20만 달러, 뉴욕 미화 50만 달러, 오논다가 미화 5만 달러, 퀸즈 미화 10만 달러, 제7사법구역 미화 5만 달러, 서포크 미화 10만 달러, 웨스트체스터 미화 10만 달러이다. Uniform Rules for N.Y. State Trial Courts, Section 202.70(a),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2025. 4. 21. 최종 확인).

71) Uniform Rules for N.Y. State Trial Courts, Section 202.70(b),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2025. 4. 21. 최종 확인).

72) Uniform Rules for N.Y. State Trial Courts, Section 202.70(a),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2025. 4. 21. 최종 확인).

73) Charlotte Leszinske, Joseph Saltarelli & Kevin V. Small, New York Commercial Division Clarifies How Claims Will Be Valued, National Law Review (2025. 3. 5.), <https://natlawreview.com/article/new-york-commercial-division-clarifies-how-claims-will-be-valued> (2025. 4. 21. 최종 확인).

74)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Litigation Division,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https://courts.delaware.gov/superior/pdf/Administrative_Directive_2010-3.pdf (2025. 4. 21. 최종 확인).

2.1.2. 영국 상사법원

영국 상사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58부 제58.1조 제2항에 따른 상사 청구(Commercial Claims)를 관할한다. 상사 청구는 교역과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의미하며, 사업상 계약, 물품의 수출입, 육상·해상·항공·배관(pipeline) 운송, 석유 등 천연자원의 개발, 보험, 금융, 시장과 거래소 운영, 상품 매매, 조선(造船), 사업상 대리, 중재 등과 관련된 청구가 이에 속한다.⁷⁵⁾

영국 상사법원에서는 국제상사사건을 압도적인 비율로 처리한다. 2023-2024년 상업법원에서 심리된 전체 사건의 약 74%가 국제상사사건이다.⁷⁶⁾

2.1.3. 프랑스 상사법원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 제L721-3조 및 제L721-4조에 따르면, 상사법원은 ① 상인, 금융 및 신용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② 회사 간 분쟁(불공정 경쟁 관련 분쟁 포함), ③ 상사거래를 다루는 분쟁, ④ 상사거래에서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한 분쟁을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상사법원 중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은 파리 상사법원 및 항소법원(Chambre Commerciale Internationale, ICCP-CA), 낭테르 상사법원, 베르사유 항소법원이다.⁷⁷⁾ 파리 상사법원의 ‘배당재판부’(chambre de placement)는 상사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국제성이 인정될 경우, 예컨대 거래의 이행이 단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분쟁이 외국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파리 상사법원 국제재판부(International chamber)에 사건을 배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⁷⁸⁾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경우 상사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파리상사법원규칙 제48조, 브뤼셀 I bis 규칙⁷⁹⁾ 제25조).

2.1.4. 독일 상사법원

독일 법원조직법(이하 괄호 안에서는 ‘GVG’로 표기한다) 제95조에 따르면 독일 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① 당사자 쌍방의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인(법인 포함)에 대한 청구,

⁷⁵⁾ Civil Procedure Rules, Part 58 Commercial Court,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art58#IDA1J3HC> (2025. 4. 21. 최종 확인).

⁷⁶⁾ 2023-2024년 영국 상업법원은 국내상사사건 173건, 국제상사사건 509건을 처리했으므로 국제상사사건의 수는 전체사건의 약 74%이다.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Commercial Court Report 2023 – 2024, p. 18.

⁷⁷⁾ 위 국제상사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의정서(protocol)에 따라 설립되었다. Mary Mitsi, “Commercial Courts: Exploring Key Models”, Asian Development Bank, 2022, p. 17.

⁷⁸⁾ *Ibid.*

⁷⁹⁾ 정식명칭은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의 이사회규정(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이하 ‘브뤼셀 I bis 규칙’)”이다.

② 금융 및 은행 소송, ③ 기업 관계(예컨대 회사 또는 상업 파트너십 구성원 간, 또는 상업 파트너십 관리자와 회사 간)에서 발생하는 청구, ④ 주식회사 관련 소송, ⑤ M&A 소송(예컨대 이전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상업 사업 인수와 관련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 ⑥ 지식재산권 소송(예컨대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 침해에 따른 청구), ⑦ 불공정 경쟁 소송, ⑧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경쟁 소송, ⑨ 해사 소송이다. 그러나 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라도 원고는 독일 법원조직법 제96조에 따라 상사법원과 일반 민사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관할은 배타적이지 않다.⁸⁰⁾ 일부 상사법원은 특정 종류의 상사사건만 심리한다.⁸¹⁾ 예컨대 만하임과 슈투트가르트의 상사법원은 기업, 인수합병, 은행 및 금융 분쟁을 포함한 일부 상사 분쟁만 관할한다.⁸²⁾

한편 2025. 4. 1. 시행된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에 따른 상사법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할이 인정된다.⁸³⁾

첫째, 당사자들은 상사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해야 한다(GVG 제119b조 제1항 제1호).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GVG 제119조b 제2항 제1문). 다만 원고는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소장을 통해 상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하고,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를 반대하지 않는 경우 관할이 인정된다(GVG 제119조b(2)항 제3문).⁸⁴⁾ 당사자 일방이 사건을 상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상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독일 민사소송법(이하 괄호 안에서는 ‘ZPO’로 표기한다) 제611조 제1항].

둘째, 분쟁은 특정 사안과 관련되어야 한다(GVG 제119b조 제1항 제1호-제3호). 독일 상사법원에서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① 기업 간의 분쟁(다만 지식재산권, 저작권, 불공정 경쟁 관련 분쟁은 제외), ② 기업 인수 또는 지분 취득 관련 분쟁, ③ 기업과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supervisory board) 구성원 간의 분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상사법원의 관할권이 주주 또는 회사 단체의 결의의 유효성 또는 적법성에 관한 분쟁이나 대세적 효력(*erga omnes effect*)이 있는 회사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⁸⁵⁾

셋째, 분쟁의 가액이 50만 유로(한화 약 8억 1,868만 원)를 초과해야 한다(GVG 제119b조 제1항 제1호).⁸⁶⁾ 복잡성 부족으로 특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상사법원의 사건수가 폭주

⁸⁰⁾ Mitsi, *op. cit.*, p. 29.

⁸¹⁾ *Ibid.*

⁸²⁾ Commercial Court, Stuttgart/Mannheim, <https://www.commercial-court.de/en/commercial-court> (2025. 4. 21. 최종 확인).

⁸³⁾ Rühl/Dewitte, *op. cit.*, p. 19.

⁸⁴⁾ 베네딕트 카네코(Benedikt Kaneko), 비외른 에버트(Björn Ebert), 미하엘 부리안(Michael Burian), “독일 상사법원 신설이 국제 소송에 미칠 영향”, 법률신문 (2025. 3. 5.); Rühl/Dewitte, *op. cit.*, p. 20.

⁸⁵⁾ Rühl/Dewitte, *op. cit.*, p. 21.

⁸⁶⁾ Giesela Rühl & Nicolas Dewitt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Made in Germany’: Attractive Alternative for Big Business?”, 44 *Pittsburg Journal of Law & Commerce* 1, 19 (2025).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분쟁 금액이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소금액 제한으로 인하여 상사법원이 전문성과 명성을 쌓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건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⁸⁷⁾ 이에 따라 분쟁의 가액에 관계없이 상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⁸⁸⁾ 제소금액을 정하더라도 훨씬 낮게 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⁸⁹⁾

2.1.5.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는 국제적인 상사사건만을 다룬다[싱가포르 상급법원절차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제18A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관할을 가진다.

첫째, 분쟁의 본질상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관할이 있다[2021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규칙(SICC Rules 2021 O.2, r.1)]. 분쟁의 본질상 ‘국제적’이라 함은 ① 소송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영업소, 당사자 간의 상사관계 의무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소송물(subject matter)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 중 하나가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 또는 ② 소송이 처음 제기될 때 소송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소송물이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인정된다[SICC Rules 2021 O.2, r.1(3)(a)]. 한편 분쟁의 본질상 ‘상업적’이라 함은 ① 소송물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② 소송이 인적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된 경우, ③ 소송이 처음 제기될 때 소송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소송물이 상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인정된다[SICC Rules 2021 O.2, r.1(3)(b)].

둘째, 당사자들이 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유효한 서면의 관할합의를 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진다[SICC Rules 2021 O.2, r.1(7)].

셋째, 고등법원(High Court)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고등법원이 국제상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을 명한 경우에 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SICC Rules 2021 O.2, r.4].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할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High Court)의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는 관할 존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데, 이는 고등법원과 국제상사법원 사이에 관할 존부에 대한

87) Rühl/Dewitte, *op. cit.*, p. 23.

88)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Rech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Report and Recommendations by the 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Federal Parliament],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s Justizstandortes Deutschland durch Einführung von Commercial Courts und der Gerichtssprache Englisch in der Zivilgerichtsbarkeit(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 BUNDESTAGS-DRUCKSACHE (BT-DRS.) No. 20/11466 of 16 May 2024, 20 et seq.

89) *Ibid.*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⁹⁰⁾

2.1.6.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네덜란드 상사법원 절차규칙(이하 ‘NCC 절차규칙’으로 표기한다) 1.3.1에 따르면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① 민·상사 사건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이나 다른 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지 않고, ② 사안의 성격이 국제적이며, ③ 당사자들이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였거나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이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다른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④ 당사자들이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고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절차규칙에 따르기로 명시적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관할이 인정된다.

2.1.7. 기타(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각 상사법원)

인도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제7조에 따르면 인도 상사법원(고등법원 상사재판부)의 관할에 속하기 위해서는 상사분쟁과 관련된 모든 청구 및 신청이 ‘특정 금액’(specified valu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특정 금액(specified value)은 30만 루피(한화 약 502만 원)이다.⁹¹⁾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은 광범위한 상사거래 또는 상사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건을 관할한다.⁹²⁾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 실무지침(Practice Directive)은 상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물품의 수출입, 육로, 해상, 항공 또는 배관을 통한 물품 운송, 보험 및 재보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시장 및 거래소 운영, 상품의 매매, 기업 구조조정 및 파산 사건에서 발생하는 상사 문제, 회사법 및 그 해석으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사 문제, 상업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건, 지식재산권 사건 등을 열거하는데, 이는 예시적 열거에 해당한다.⁹³⁾

2.2. 상사법원 도입시 입법방안

2.2.1. 상사사건 등에 관한 심판권 인정

외국의 상사법원의 관할을 살펴본 결과 상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은 상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보험 사건의 경우 영국과

⁹⁰⁾ Wei Yao & Kenny CHNG, “Exploring a New Frontier in Singapore’s Private International Law: M Skaugen SE v MAN Diesel & Turbo SE [2016] SGHCR 6” 28 SAcLJ 649, 663 (2016).

⁹¹⁾ Mitsi, *op. cit.*, p. 79.

⁹²⁾ Daily Maverick, “Commercial Court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outh Africa: A possible path to faster dispute resolution” (2025. 4. 17.), <https://www.dailymaverick.co.za/article/2025-04-17-commercial-courts-and-alternative-dispute-resolution-in-south-africa-a-possible-path-to-faster-dispute-resolution/> (2025. 4. 21. 최종 확인)

⁹³⁾ Mitsi, *op. cit.* p. 4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각 상사법원은 관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뉴욕주 상사재판부는 보험을 분류하여 환경보험, 상사보험은 관할을 인정하는 반면 비상업용 보험은 관할에서 배제한다. 해사사건의 경우 관할 사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상사법원들이 상당하나,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의 각 상사법원은 명시적으로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다. 지식재산, 도산 사건도 미국, 영국, 프랑스의 각 상사법원은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각 상사법원은 관할을 가지는 사건으로 명시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마다 무엇이 ‘상사(commercial matters)’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법 하에서 ‘상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사법원이 취급하기에 적절한 사건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상사법원을 도입할 경우에 상사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된다. 사건으로는 외국의 상사법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예를 참고하여 ① 상사소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상사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③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상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위 내용은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심판권)을 신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에 따라 상사법원이 심판할 상사사건의 범위에 관한 세부규정을 포함한 대법원규칙을 작성하고, 위 대법원규칙에서 상사법원이 심판할 상사소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구체적 유형을 나열한 예시적 열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후술할 바와 같이 대법원규칙에서 소액사건은 상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신 설>	제40조의10(심판권) 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소송(이하 ‘상사소송사건’)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상사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상사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

2.2.2. 전속관할 인정 여부

상사법원의 도입시 전속관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속관할은 법률상 명문으로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 경우로서 재판의 적정 등 고도의 공익적 고려에서 정해지는 반면, 임의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관할로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고려에서 정해진다.⁹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독일 상사법원은 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라도 원고가 독일 법원조직법 제96조에 따라 상사법원과 일반 민사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일 상사법원의 관할을 임의관할로 정하였다.⁹⁵⁾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상사법원, 인도 등은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전속관할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정의 직분, 다수인의 이해관계, 특정한 소송법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⁹⁶⁾ 상사법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상사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송법적 목적과 더불어 당사소송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사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2.3. 최저 청구금액의 설정 여부

상사법원 도입시 최저 청구금액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뉴욕주 상사재판부의 경우 미화 50만 달러 이상), 독일(2025년 시행된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에 따른 상사법원의 경우 50만 유로 초과), 네덜란드(25,000 유로 초과), 인도(30만 루피 이상)의 각 상사법원은 최저 청구금액을 두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각 상사법원은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사사건을 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최저 청구금액 기준을 두는 것은 상사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걸러내고, 상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넘쳐나는(floodgate)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⁹⁷⁾ 그러나 최저 청구금액이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최저 청구금액이 과도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상사법원 이용도가 낮아지며 상사법원의 충분한 수의 사건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⁹⁸⁾ 최저 청구금액 기준 도입 여부 및 구체적 금액의 결정은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더불어 최저 임금 및 관할 내 광범위한 상사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⁹⁹⁾

상사법원 도입 단계에서는 사건수가 폭주할 것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전문법원으로서 일정

94)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24, 67면.

95) Mitsi, *op. cit.*, p. 29.

96) 김홍엽, 앞의 책, 67면.

97) Mitsi, *op. cit.*, p. 88.

98) Rühl/Dewitte, *op. cit.*, p. 23.

99) Mitsi, *op. cit.*, p. 88.

규모 이상의 사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소송목적의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등 상사법원에서 처리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사사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사법원 도입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을 초과할 것을 최저 청구금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사건의 경우에 국내상사사건과 다른 최저 청구금액 기준을 둘 것인지 문제된다.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최저 청구금액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해당 관할법원의 국제사회에서의 인기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¹⁰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최저 청구금액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네덜란드 국제상사법원(NCC)은 25,000 유로(한화 약 4,094만 원)를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을 가진다. 최저 청구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다른 국제상사법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상사법원의 도입을 통하여 국제상사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상사사건과 동일한 최저 청구금액 기준(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초과)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재판부 구성과 소속법관의 전문성

3.1. 외국 상사법원의 경우

3.1.1. 미국 상사법원

뉴욕주 상사법원 판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뉴욕주 제1심 법원(Supreme Court)의 경험이 풍부한 판사이다.¹⁰¹⁾ 이들은 상사분야의 변호사로서 상사사건, 부동산 및 소송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¹⁰²⁾

3.1.2. 영국 상사법원

영국 상사법원 판사의 임명은 사법임명위원회(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¹⁰³⁾ 2025년 현재 상사법원에는 상사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13명의 전문법관이 있다.¹⁰⁴⁾ 이들은 법정 변호사, 로펌 파트너, 정부 변호사를 포함한 선임 변호사의 경력을 가지고

¹⁰⁰⁾ Mitsi, *op. cit.*, p. 88.

¹⁰¹⁾ *Ibid.*, p. 67.

¹⁰²⁾ *Ibid.*

¹⁰³⁾ ‘About Us’,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https://judicialappointments.gov.uk/about-the-jac/> (2025. 4. 21. 최종 확인).

¹⁰⁴⁾ <https://www.gov.uk/courts-tribunals/commercial-court> (2025. 4. 21. 최종 확인).

있다.¹⁰⁵⁾

3.1.3. 프랑스 상사법원

프랑스 상사법원 소속법관은 모두 일반인 법관(lay judges)로서 1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임기별로 임명된다.¹⁰⁶⁾ 일반인 법관은 상인과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이다. 프랑스 상사법원 법관은 동료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법관(peer-elected judges)이다. 법원장, 전문법관 1명, 도지사(Préfet)¹⁰⁷⁾ 대표, 그리고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원 명단을 작성한 후 선거를 실시한다(프랑스 상법 R723-1조 내지 R723-31조). 프랑스 상사법원 판사는 일반인 법관으로서 상당한 사업지식을 가진 자들 중에서 선출되므로 재계의 규칙과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사건은 무작위로 배정되므로 일반인 판사의 특정 경험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장은 없다.¹⁰⁹⁾

일반인 법관은 무급 자원봉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국립사법학교(ENM)는 일반인 판사들에게 신입 및 현직 교육을 제공한다. ENM은 2003년부터 상사법원 법관 총회(conférence générale des juges consulaires de france)와 협력하여 일반인 법관들을 교육해 왔다. 상사법원 법관의 신입 및 현직 교육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¹¹⁰⁾

상사법원 내 전문법관의 역할은 항소심에 국한된다.¹¹¹⁾ 파리상사법원 국제재판부에서 분쟁의 성격상 전문법관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는 다른 전문법원 판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¹¹²⁾ 그러나 파리상사법원 법관의 평균 연령이 61세이고, 법관의 50%가 은퇴한 상인이라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¹¹³⁾

¹⁰⁵⁾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Review 2022’, Linklaters, <https://lpscdn.linklaters.com/-/media/files/document-store/pdfns/2022/may/iccr2022final.ashx?rev=ca8e6e99-5d90-43a4-ad14-9426ed35249e&extension=pdf> (2025. 4. 21. 최종 확인).

¹⁰⁶⁾ *Ibid.*, p. 24.

¹⁰⁷⁾ 도지사(Préfet)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또는 레지옹(régions)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https://www.bouches-du-rhone.gouv.fr/Services-de-l-Etat/Prefet-et-prefecture#Lepr%C3%A9fet> (2025. 4. 21. 최종 확인).

¹⁰⁸⁾ Mitsi, *op. cit.*, p. 24.

¹⁰⁹⁾ Mitsi, *op. cit.*, p. 25.

¹¹⁰⁾ 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https://www.enm.justice.fr/en/training-courses/commercial-courtjudges> (2025. 4. 21. 최종 확인).

¹¹¹⁾ Mitsi, *op. cit.*, p. 25.

¹¹²⁾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Review 2022’, Linklaters p. 6, <https://lpscdn.linklaters.com/-/media/files/document-store/pdfns/2022/may/iccr2022final.ashx?rev=ca8e6e99-5d90-43a4-ad14-9426ed35249e&extension=pdf> (2025. 4. 21. 최종 확인).

¹¹³⁾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nquete (1) Sur L'activite Et Le FonctionnementDes Tribunaux De Commerc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1/dossiers/tribunaux-de-commerce/rap1p1.asp> (2025. 4. 21. 최종 확인).

3.1.4. 독일 상사법원

독일 상사법원은 선임 전문법관(senior professional judge) 1명과 명예법관(honorary judge)를 겸임하는 2명의 일반인 법관(lay judge)으로 구성된다. 일반인 법관은 30세 이상의 재계 인사로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험을 가진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법무부 지방 지부에서 임명된다.¹¹⁴⁾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실무가의 개입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¹¹⁵⁾ 이 경우 당사자들은 3명의 전문법관이 있는 민사법원에서 심리할지, 1명의 전문법관과 2명의 일반인 법관이 있는 상사법원에서 심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¹¹⁶⁾

상사법원의 일반인 법관의 명성은 상당히 높으나,¹¹⁷⁾ 절차에의 참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349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법관은 순전히 절차적 결정(회부, 항소, 소송 중지, 당사자의 불이행, 비용, 법률 지원 등)에 관한 독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¹¹⁸⁾ 법률에 명시된 상사 문제를 다루는 사건의 최대 90%에서 상사법원의 일반인 법관의 참여는 민사소송법(ZPO) 제349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포기된다.¹¹⁹⁾

법관의 국적은 독일이다. 슈투트가르트나 만하임 상사법원과 같이 더 복잡하거나 국제적인 사건을 다루도록 특별히 설계된 법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¹²⁰⁾ 다만 상사 문제에 대한 전문성, 학력 또는 외국어(주로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고려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¹²¹⁾

3.1.5.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재판부는 싱가포르 국적인 싱가포르 대법관과 외국인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²⁾ 2025년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법관 수는 총 38명이고, 그 중 외국법관의 수는 24명이다.¹²³⁾

외국인 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외국인 법관으로서의 필요한 자격과 경험,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될 수 있다(싱가포르 헌법 제95조 제4항 c호). 외국인 법관은 주로

¹¹⁴⁾ Gerhard Wagner and Arvid Arntz, *Commercial Courts in Germany* in Lei Chen and Andre Janssen (eds.), *Dispute Resolution in China, Europe and World*, Springer, 2020, p. 9.

¹¹⁵⁾ *Ibid.*, p. 11; Mitsi, *op. cit.*, p. 35.

¹¹⁶⁾ Mitsi, *op. cit.*, p. 35.

¹¹⁷⁾ Weber in Hartmann/Toussaint, *Kostenrecht*, 50th ed. 2020, § 107 no. 5.

¹¹⁸⁾ Gerhard Wegen, Taras Shepel, “The Functioning of The Commercial Lay Judges In Germany. The History And The Perspective of Resuming The Activity of Commercial Lay Judges In Ukraine With The Application of German Experience” (2020), p. 11, https://drive.google.com/file/d/1WfSt8t-e6vUt_GJiIkE1l-Uz8-Hsgxkn/view (2025. 4. 21. 최종 확인).

¹¹⁹⁾ *Ibid.*, p. 11.

¹²⁰⁾ Mitsi, *op. cit.*, p. 36.

¹²¹⁾ *Ibid.*

¹²²⁾ 김정환, “국제상사법원과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 - 국제상사법원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5), 6면.

¹²³⁾ SICC homepage, “Judges”, <https://www.judiciary.gov.sg/singapore-international-commercial-court/about-the-sicc/judges> (2024. 12. 1. 최종방문).

상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홍콩, 영국, 미국 등의 출신 전·현직 법관¹²⁴⁾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¹²⁵⁾ 외국인 법관은 임기를 정해 임명될 수 있고[싱가포르 상급법원절차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제9조 제4항 b호],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 및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상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싱가포르 상급법원절차법 제5A조, 제9조 제4항 b호, 제29조 제4항 b호).¹²⁶⁾

3.1.6.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현재 네덜란드 상사법원에는 1심법원 18명, 항소법원 10명 총 28명의 법관이 있다.¹²⁷⁾ 외국인 법관을 임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상당수의 네덜란드 법관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법률용어 구사에 있어서는 모국어와 차이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¹²⁸⁾ 네덜란드 상사법원의 1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한다.¹²⁹⁾ 다만 가처분 사건 등을 다루는 약식재판은 단독 판사가 처리한다.¹³⁰⁾

3.1.7. 기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상사법원법 제3조는 각 주 정부가 관련 고등법원장과 협의하여 상업 분쟁 처리 경험이 있는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¹³¹⁾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에서는 풍부한 상업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진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심리한다.¹³²⁾ 2024년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 가우텡 지부에는 33명의 판사가 있고, 고등법원 가우텡 지부에는 46명의 판사가 있다.¹³³⁾

3.2. 상사법원 도입시 입법방안

우리나라에 상사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사법원의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법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제된다. 상사법원 도입시 일부 외국의 상사법원과 같이 일반인 법관(lay

¹²⁴⁾ 김정환, 앞의 논문, 6면.

¹²⁵⁾ Mitsi, *op. cit.*, p. 76.

¹²⁶⁾ 김정환, 앞의 논문, 6면.

¹²⁷⁾ de Rechtspraak homepage, “NCC - Judges & Staff”,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judges-and-Staff.aspx> (2025. 4. 25. 최종 확인).

¹²⁸⁾ 김정환, 앞의 보고서, 139면.

¹²⁹⁾ de Rechtspraak homepage, “NCC - Judges & Staff”,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judges-and-Staff.aspx> (2025. 4. 25. 최종 확인).

¹³⁰⁾ *Ibid.*

¹³¹⁾ Mitsi, *op. cit.*, p. 83.

¹³²⁾ *Ibid.*, p. 53.

¹³³⁾ <https://www.judiciary.org.za/index.php/judiciary/superior-courts/judgeship/gauteng-division-judges> (2025. 4. 21. 최종 확인).

judge)의 임명과 외국인 법관의 임명을 각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법관을 임명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외국의 상사법원의 입장은 ① 전문법관형, ② 일반인법관형, ③ 혼합형의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전문법관형에는 영국 상사법원, 미국 상사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인도 상사법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이 해당된다. 이들 상사법원은 상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관을 배치할 뿐 일반인 법관은 두고 있지 않다. 일반인 법관형에는 프랑스 상사법원이 해당된다. 프랑스 상사법원은 동료에 의하여 선출된 일반인 법관으로만 재판부를 구성한다. 혼합형에는 독일 상사법원이 속한다. 독일 상사법원은 1명의 전문법관과 2명의 일반인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일반인 법관형은 재계의 관행이나 사업분야에 대한 실무지식이 풍부한 일반인 법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인 법관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혼합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혼합형에 해당하는 독일 상사법원 실무에서 당사자들의 90%가 상호포기에 의하여 일반인 법관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¹³⁴⁾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일반인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상사법원의 일반인 법관의 법적 분쟁 처리 또는 법률 해석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상사법원의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상사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이 있고, 이것이 독일 상사법원의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¹³⁵⁾ 결국 우리나라의 상사법원 도입시 전문법관형을 채택하여 상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배치하되 전문성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영국 상사법원의 법관들도 복잡하고 고액의 상사 분쟁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점¹³⁶⁾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사법원 도입시 외국인 법관을 임명할 것인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외국 상사법원의 사례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과 네덜란드 상사법원(NCC)에서만 외국인 법관을 임명하였고, 나머지 상사법원들은 모두 자국의 국민이 상사법원 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외국인 법관의 임명은 재판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제상사사건을 유인하는 한편 국제상사분쟁을 중립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상을 당사자들에게 줄 수 있다.¹³⁷⁾ 헌법 제101조와 제105조가 판사의 자격 및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이 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42조를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법관을 상사법원 국제상사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¹³⁸⁾ 그러나 상사법원 국제상사재판부에 제소

¹³⁴⁾ Gerhard Wegen, Taras Shepel, “The Functioning of The Commercial Lay Judges In Germany. The History And The Perspective of Resuming The Activity of Commercial Lay Judges In Ukraine With The Application of German Experience” (2020), p. 11, https://drive.google.com/file/d/1WfSt8t-e6vUt_GJilkE1l-Uz8-Hsgxkn/view (2025. 4. 21. 최종 확인).

¹³⁵⁾ Wagner/Arntz, *op. cit.*, p. 11; Mitsi, *op. cit.*, p. 92.

¹³⁶⁾ Mitsi, *op. cit.*, p. 92.

¹³⁷⁾ 김정환, 앞의 논문, 18면.

¹³⁸⁾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문헌으로는, 위의 논문, 17면.

된 사건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 외국인 법관에 의한 재판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외국인 법관 임명 여부는 외국인 법관의 임명이 실제로 국제상사사건 유치나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인터뷰 및 통계 등 실증적 분석을 하는 한편,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4. 절차

외국의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건관리(case management)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상사법원에서는 사건관리 회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프랑스 상사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적 항변 또는 증거허용성에 대한 항변을 분리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절차적 의제를 설정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프랑스 상사법원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주재하는 일련의 회의로 구성된 공판 전 단계가 있다. 독일 상사법원의 법관도 사건관리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사법원은 각 사건마다 한두 명의 판사가 사건 관리자로 지정되며, 이들은 각각 두 번의 사건관리회의를 주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영미법계 접근 방식에 가까운 사건관리방식을 채택하였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항소 단계를 포함하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많은 사건 회의를 개최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규칙 Order 9, Rule 3). 한편 인도는 자백 진술서 및 청구기각 진술서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사건 관리 심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상사법원 도입시 사건관리회의를 도입하여 상사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에 독립된 전문법원 형태로 상사법원을 도입할 경우 설립형태, 재판권 및 관할, 재판부 구성과 소속법관의 전문성,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상사소송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 권리관계에 대한 고려와 상법상 특유한 법리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고 소송절차 면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특히 상사사건이 대규모화, 고도화, 국제화됨에 따라 상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차원에서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가 있을 뿐 국내상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법원으로서의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상사법원을 도입한 경우의 상사소송의 해결에 미칠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주 강 원*

Empty box for the discussion text.

*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상사사건 분쟁해결의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유 돈*

*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제 4 세 셴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편 우선, 개별행위 대응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

사회: 권 종 호

발표: 유 영 국

토론: 박 준 영 / 박 미 영

I. 들어가며



일간투데이, '전자상거래 기업 70% '시' 프로젝트 매출 성공작', 2018-10-15

법규범은 그 형성 당시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전반의 모습을 반영함으로써 입법의 정당성과 함께 해석·집행의 설득력을 담보하게 됨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에 상응하는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규범 대상인 사실관계를 입법 시에 반영하여야 함(Eugen Huber, 1921)

- 다만, 입법의 정당성과 해석·집행의 설득력은 불변의 입법 결론일 수 없으며,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수반될 때 유지될 수 있음
- 그러한 '대응' 요구는 기존 법령의 해석·적용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 제·개정이 고려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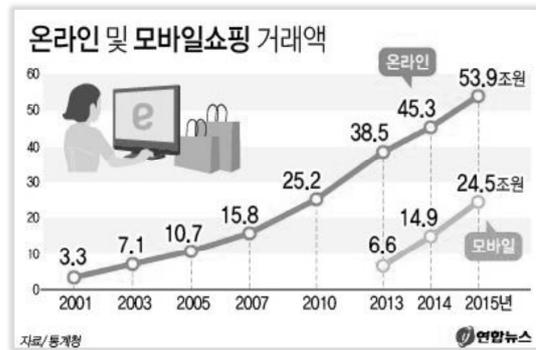


다만,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지나치게 기민한 대응은 오히려 법규범의 속성상 용이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여야 함

I. 들어가며 : '시장환경 변화와 성장'

❖ 2000년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확산과 거래규모 성장

- 인터넷이 정보 교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중요 상거래 수단이자 공간으로 급속히 부각되면서, 인터넷 가상시장에서 상품의 홍보·마케팅·전시·판매·결제·고객서비스까지 모든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당시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형성된 소위 '사이버마켓'은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쉽게 뛰어들면서 새로운 업종 및 비즈니스 기회의 발생으로 이어졌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는 전자결제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에 접목되면서 급속 확산됨
-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유통구조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유통구조의 대대적 변화 요구에 직면하였고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기업의 사업전략을 넘어 그 체질까지 전면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룸



[참고] 연합뉴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15년간 16배 폭...모바일 매년 2배씩 ↑, 2016.6.16

I. 들어가며 : ‘시장환경 변화와 성장으로부터 비롯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 ‘규범적 대응 지속’

❖ 제정이유 - 법률 제6687호, 2002.3.30. 제정(2002.7. 시행)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중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 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당시 방문판매법은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의 연장선 상에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와 함께 규율함으로써, 급속한 변화, 발전과정에 있던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 충분한 소비자보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짐
- 이에 국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문판매법으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



전자상거래법 제정은 “**시장환경과 거래현실의 변화·성장에서 비롯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으로서 동 법 해석·적용에 있어서 설득력 담보는 결국 “**전자상거래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 대응(normative Anpassungen)**”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함

II. 법 제·개정의 경과

❖ 제정법률 주요 내용

가. 전자문서의 활용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법 제5조 제1항)

나. 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법 제7조)

다.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 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외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 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함 (법 제17조 제1항)

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법 제24조 제1항)

마. 시정조치 등

공정위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 제32조 제1항)

바. 과징금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 제32조 제4항 및 제34조)

II. 법 제 · 개정의 경과

❖ 법 개정의 경과

- 2002년 제정 이후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7차례 타법개정을 제외한 10차례가 동 법 자체의 개정수요에 따른 일부개정임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제 · 절차법적 차원의 개정 : 새로운 제도 도입 · 개선 / 사업자 의무 · 책임 강화 / 금지행위 추가 등
- 가장 최근의 법개정은 2024.2.13. 일부개정으로 2025.2.14. 시행되었음

(1) 2005년 개정 - 법률 제7487호, 2005.3.31., 일부개정(2005.3.31. 시행)

비대면(非對面) 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차별적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광고 수신 거부 의사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

(2) 2007년 개정 - 법률 제8538호, 2007.7.19., 일부개정(2007.10.20. 시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인 지연이자율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함

(3) 2010년 개정 - 법률 제10172호, 2010.3.22., 일부개정(2010.3.22. 시행)

당시 동법의 양벌규정은 영업수가 총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영업수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함

5

II. 법 제 · 개정의 경과

(4) 2012년 개정 - 법률 제11326호, 2012.2.17., 일부개정(2012.8.18.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정보와 환불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5) 2013년 개정 - 법률 제11841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11.29. 시행)

당시 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선택하도록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정하고 있었음. 이에 5만원 이하 거래에도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6) 2016년 개정 - 법률 제14142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9.30. 시행)

포털사이트는 소속 카페 및 블로그의 법적 의무 준수를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청약철회 방해 시 가능 기간을 방해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용역 및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함. 또한, 오픈마켓과 앱스토어 등은 거래 과정에서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7) 2017년 개정 - 법률 제15141호, 2017.11.28., 일부개정(2018.5.29. 시행)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6

II. 법 제·개정의 경과

(8) 2018년 개정 -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2018.12.13. 시행)

공정위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관련 절차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함. 한편, 조사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출석처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 개편 시도' → 잠정 중단(?)

2021.3.5. 공정위는 전통적 통신판매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전자상거래법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중심으로 개편' 및 '소비자 보호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당시에는 국내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2021.1. 26.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음(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와 -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관련 계획 없음)

주요 내용 : ① 용어 정비와 편제 개편(제2조) : '통신판매업자'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로 / ②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강화(제16조, 제18조) : 각종 공개의무 / ③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제25조) : 플랫폼사업자의 '연대책임' / ④ 개인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제29조) :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등

당시, 개정안 일부 내용이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정보침해 소지 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안 일부가 수정된 바 있으며, 현재로서 전부개정 추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임 → 개정 추진 이전부터 노정된 문제들 여전히 존재

(9) 2023년 개정 - 법률 제19255호, 2023.3.21., 일부개정(2024.3.2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에만 있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 피해 자료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자 함

7

II. 법 제·개정의 경과

(10) 2024년 개정 - 법률 제20302호, 2024.2.13., 일부개정(2025.2.14. 시행)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운영 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 (제21조의2 신설)

-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영묘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계약으로 유인행위
- ③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 ④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다.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 (제 21조의2 제2항)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21조의3 신설)

8

III. 법 개정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의식

경영사학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환경, 기술, 특징을 비교분석 한 연구(김은주·신건철, 2022)에 따른 글로벌 전자상거래 추이와 '시대별 전자상거래의 전개 과정과 특징'은 아래와 같음

시기	E-커머스 1990년	M-커머스 2000년	소셜 커머스 2010년	4IR 커머스 2020년
특징	세계성, 국제표준화, 정보이용 가능성, 상호대화성, 정보밀집성	편재성, 접근성, 보안성, 위치 확인, 개인화, 즉시 연결성	소셜자성, 신뢰자성, 개인화 상거래 구현, O2O 상거래 플랫폼, 소비자 주권 실현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복합화, 변화의 속도, 변화의 범위, 시스템의 영향
기술의 발전	유선 전자상거래 기술	모바일 전자상거래 기술	소셜 전자상거래 기술	ICBM 상거래 기술
경제적 영향	강력하고 효율적인 구매수단 제공, 소비자 선택의 권리 실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대	자식, 정보, 재화의 생산과 소비 급증, FTA 시대 도래, 중간소비자의 소멸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 소셜 커머스 시장의 급성장, 온라인 유통 산업의 변화	ICBM 기술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고객 니즈 충족
사회적 영향	Paid media를 통한 사회적 가치	Owned media를 통한 사회적 가치	Earned media를 통한 사회적 가치	Creative earned media를 통한 사회적 가치
학문적 영향	사이버교육 시스템, 학습자 참여 시스템, 교육의 상호작용 시스템	자기주도적 교육, 흥미 중심의 교육, 수준과 적성별 교육, 정보기술 활용 교육	1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교육, 소셜 커머스를 통한 참여 교육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문화적 영향	소비형태, 생활양식 및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형태 인식 변화, 새로운 직업 창출	소셜 파워의 영향력 확대, 복지 확대 논의의 구체화, 소통 능력 증진	이용객 증가 · 트래픽 및 참여 증가 · 신뢰구축, ROI 추적 및 향상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구성 상징, 물리, 소통 경험의 융합화
대표 사례	WWW 웹 출시, eBay 설립, Paypal 설립	휴일 온라인 구매 비중 70%, Cyber Monday, 온라인 첫 구매시 모바일 이용	소셜링크, 소셜 웹, 공동구매, 오프라인 연동	차세대 디지털 비서를 통한 구매대행(Siri, Cortana, Google)



* ICBM -> 이른바 'ICBM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현재는 4R 커머스 시기이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체계를 보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플랫폼 구조는 넘어 **Gen. AI 기술발전과 사업모델 접목 시도 확산**을 고려하면 **시대 구분 주기는 보다 짧아져** 현시점에 **새로운 커머스 시대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임

III. 법 개정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의식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정의 조항은 주목할 만한 내용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시장환경은 물론 거래현실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21년 전부개정 논의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음)

제정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6687호, 2002.3.30. 제정(2002.7.1. 시행)	현행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20302호, 2024.2.13. 일부개정(2025.2.14. 시행)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p>※ 전자문서법 제2조 제5호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p>	

Ⅲ. 법 개정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의식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부분을 독립시켜 마련한 법률]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법률명만을 두고 보면 '전자거래의 방법으로서의 상행위, 즉 전자상거래'를 주로 규율할 것 같으나, 구체적 규정을 보면 '전자상거래'보다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개념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함

- 지금의 거래구조 내지 현실을 보면 '우편·전기통신 등을 통한 통신판매'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은 여전히 과거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방식의 일상화를 법체계에 반영하지 못함
-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정의조항은 법령의 적용 대상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함. 즉 정의규정이 갖는 법 적용대상 및 범위의 설정 기능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세부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1차적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부개정의 어려움과 그 추진의 지체] 2021년 전부개정 논의와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완전 혹은 충분한 해결책이었다고 할 수는 없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며, 법체계의 근본적 개편 시도 자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노정된 기존 규범체계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음

11

Ⅲ. 법 개정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의식

-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사용 여부가 법 적용 여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하지만, 지금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이를 개념상 전자상거래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표지로 유지하는 것이 유효할지 의문이 제기됨(2021년 전부개정안의 경우, '비대면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정의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일정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함)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중심의 규정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구조 내지 현실을 반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실제로, 전부개정안의 경우 통신판매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에 관한 정의규정(제12호)을 별도로 두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규제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음(안 제23조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의 준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 또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 중 "전자상거래"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로 보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본다]
-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의 개념'을 토대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구조 내지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일상화라는 거래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전부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제4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제5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제6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제7호)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당해 서비스의 구분(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을 통해 사업자를 유형화하고자 함. 다만, 이러한 정의를 통한 유형적 구분과 무관하게 플랫폼의 속성으로서 '중개'기능을 토대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중거래마켓 등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개인판매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 바 있음. 이에 전부개정안은 제29조에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개인판매자) 개념을 도입한 바 있으나, 관련 거래가 확산되고 보호 필요성이 있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넘어 사업자와 개인판매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측면은 여전히 존재함

12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전자상거래법 최근 개정 사항 : '사전 동의 의무'(작위외무) + '금지행위 추가'(부작위외무) + '자율규제 권장'

가장 최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기존 법령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 포함(24.125.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그 시행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2.14.부터 시행 중

구 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위임 사항
다크패턴 규율	① (숨은결제)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제13조 제6항	시행령 (사전 동의 기간)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③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변경요구 제한 기간)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과태료		시행령 (영업정지 처분/과태료 부과기준)
지침/ 자율규약	·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 마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진시정을 위해 자율규약 제정 가능	제21조의2 제2항 /제21조의3	

13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법 개정 전 관련 법률개정안

그 속성상 다크패턴의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이 제안되어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음

- 이용우 의원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금지행위 유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안번호: 211595, 2022.6.14.) 발의
- 이성만 의원안은 법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안번호: 2116237, 2022.7.1) 발의
- 김용관 의원안은 법 제21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8호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20808, 2023.3.22.) 발의
- 송석준 의원안은 법 제8조 제6항, 제13조 제3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그 증액·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증액·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할 의무' 부과 및 금지행위 규정상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안번호: 2121482, 2023.4.20.) 발의

14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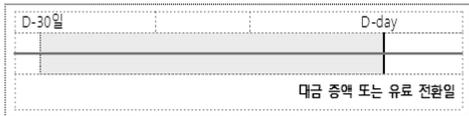
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통신판매업자에게 ①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를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입법예고 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약화 등을 이유로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함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법 제21조의2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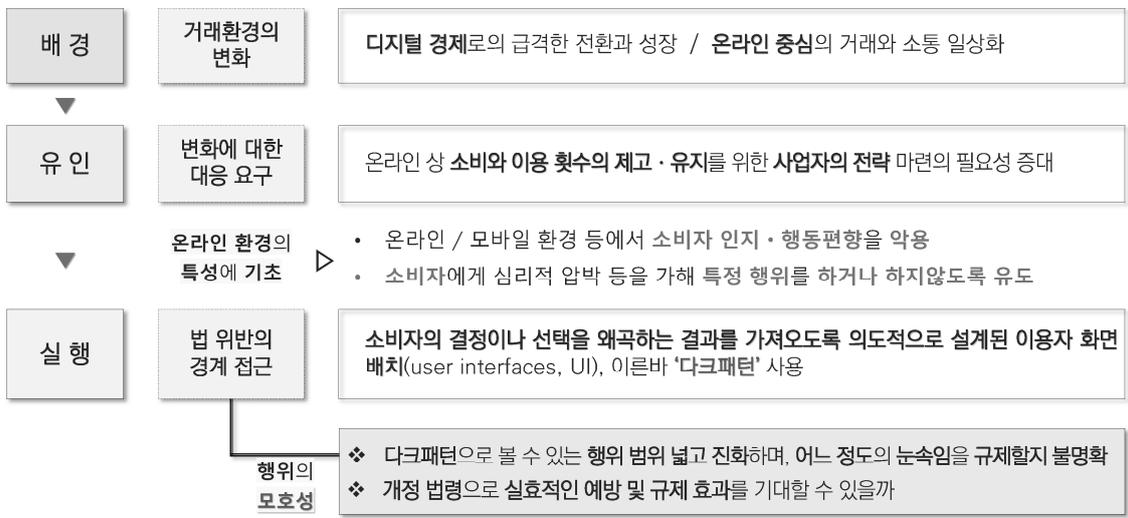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공정위는 관련 법령 마련 이전인 2023.7.31.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시행 직전인 2025.2.13.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를 배포한 바 있음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다크패턴의 개념적 이해

- ✓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다크패턴(Dark Pattern, 소위 ‘소비유도상술’ 또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보편적이며 합의된 정의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속성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음
- ✓ 다크패턴 디자인은 이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이너인 Harry Brignull이 2011년 제시한 개념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박탈의 결과로 이어지는 온라인 거래상의 의도된 속임수와 조작(purposeful deception and manipulation) 행위’**로 인식됨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다크패턴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의 Brignull의 아래와 같은 발언은 다크패턴의 그러한 속성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제공함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당시 그것을 이해했거나 선택권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완료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조작적 또는 기만적 속임수이다. [...] 이 용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면, 그것은 디자인 패턴(design pattern)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디자인 패턴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고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이다. 안티패턴(anti-patter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실수이다. [...]”

[FTC, Bringing Dark Patterns to Light: An FTC Workshop, 2021.4.29.]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 다크패턴은 일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UI)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방식 또는 은밀한 조작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즉, **이용자 내지 소비자 기만행위로서 성격이 강함**
- ✓ 다크패턴 디자인은 대개 소비와 이용 횟수의 제고·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교묘한 속임수 정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 내지 소비자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의도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을 악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If we put aside our moral quibbles let’s put ourselves in the shoes of an evil web designer for a moment. How can we take advantage of our customers in the most effective manner? **First off, subtlety is our friend.** [...]”

[Harry Brignull, Dark Patterns: Deception vs. Honesty in UI Design, 2011.11.1.]

- 이러한 맥락에서 판매 마감 압박을 강조하거나 카운트다운 표시를 눈에 잘 띄게 배치하는 등 자신만이 어떤 흐름이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이른바 포모(fear of missing out, FOMO) 증후군을 유발하여 소비자가 자칫 나만 좋은 기회·물건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구매 등의 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 유형이 됨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다크패턴은 소비자 이용 횟수의 제고를 위하여 사용되는 속임수 정보의 형태를 가지면서, 온라인 내지 모바일 환경 등에서 **소비자 인지·행동편향을 악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오프라인과 달리** 사용자 행동 정보를 캡처·유지함은 물론 전환과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용자 상호작용을 설계·조정함으로써 사용자에서 미리 접근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쇼핑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후기와 평점, 할인이나 추가 증정, 장바구니에 추가 버튼 등 충동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성격과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다크패턴 디자인 등이 보다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음**
- 다만, 다크패턴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음은 물론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사용자 등도 그러한 온라인 거래상의 의도된 속임수와 조작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규제 필요성의 제기가 늦어진 측면이 있음**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유형화의 한계와 법적 규제를 위한 재분류의 선행 필요성

- ✓ 유형화를 위한 종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으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도출은 용이하지 않음
- ✓ 게다가 사용자 기만 내지 은밀한 조작을 다크패턴의 주된 속성으로 보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유형과 그 정도는 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 ✓ 즉, 법적 규제를 시도함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와 아닌 행위가 혼재된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재분류 선행이 중요함**. 또한, 유사하거나 공통된 속성의 행위들을 다크패턴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섭하더라도 단일한 규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다크패턴의 요건과 주된 위법성 표지

- ✓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제되는 행위의 형식이 **'온라인 서비스 또는 그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조나 기능을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 ✓ 만약 그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이나 방식 등이 **'당해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정보에 근거한 이용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방해'**하는지와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가 전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다크패턴에 의한 이용자의 수락이나 동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
- ✓ 따라서 **UI의 설계, 수정 또는 조작 등의 행위와 무관한** 약관, 광고, 프라이버시 및 기타 설정, 추천자 시스템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의 단순히 **설명·고지행위**의 경우 내용상 사용자 기만성이 인정되더라도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곤란할 수 있음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속성을 가진 다양한 행위들을 다크패턴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규제하는 방식과 각 행위의 내·외형적 속성을 엄밀히 구분하여 개별 법률로 규제하는 방식 중 어느 경우가 적절한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고민하기에 앞서, 거래상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과 그 구체적 방식을 상술로 이해한다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 속성상 어느 정도의 기만성은 내포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온라인이라는 비대면적 거래 환경을 고려하면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자율적 결정·선택 보장이라는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임
- 이미 입법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크패턴의 규제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는 일응 공감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기존의 규제 근거(제21조 제1항 제1호 등)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다크패턴의 일반적 속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을 하나 정도 추가하는 방식, 법률에 위반유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금·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음

Ⅳ.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규제 전제

- 온라인상 소비자 기망이나 선택권 박탈로 이어지는 사업자의 전략적 상술은 허용될 수 없음
- 사술(詐術)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의도된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면(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1157 판결)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 다크패턴 역시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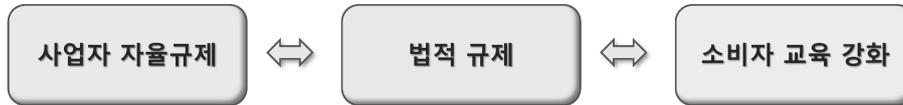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제 방향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자율 규제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의무 부과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항 신설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추가 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	사업자 자율규제 가능성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신설

IV. 최근 법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 환경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안의 상호작용 강화



소비자·이용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법적 규제의 현실적 한계: 엄격한 규제 기대에도, 온라인 상 활동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
- 자율 규제의 효율성 활용: 실효성 우려에도, 법적 규제의 한계 보완과 사전 예방적 효과 및 신속한 개선 기대 가능
- 소비자 주도적 역량 강화: 똑똑한 소비자는 시장참여자이자 감시자로 역할해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 기대 제고



다만, 법상 동시에 그 근거가 마련된 법적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범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양 자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경쟁당국 차원의 설명과 유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다크패턴과 같은 규제대상 행위는 그 속성상 법적 근거 마련보다 실효적 집행가능성 여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 준 영*

유영국 교수님의 꼼꼼한 발표문을 통해 온라인 다큐패턴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의 최근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동법의 제·개정 연혁 및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자님의 고민을 확장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 간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상거래법의 위상(1.),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구조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평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2.), 자율규제 관련 코멘트(3.)를 개괄 식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의견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전자상거래법 집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사례

-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자사우대, 배타조건부 거래 등)
 - 소비자관련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례

-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제재 (25.4.)
- 당근마켓 제재 (25.3.)
- 한국은거래소 인터넷 쇼핑몰 제재 (25.2.)
- 에어비앤비(24.3.)
- 카카오(24.1.)
- 7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쇼핑), 카카오(카카오주문하기, 쇼핑하기, 장보기), 11번가, 쿠팡, 티몬, 이베이(지마켓, 옥션, 지구), 인터파크(22.3.)
- 5개 OTT 사업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KT 올레TV, LG U+, 웨이브(22.2)
- 6개 이성소개 앱 사업자 (20.9.)
- 2개 온라인 쇼핑 사업자: 신세계쇼핑, 우리홈쇼핑(20.2.)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Ph.D. in Law).

○ 향후 집행방향

- 소비자법제를 활용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는 계속 지속될 것임
 - 새로운 플랫폼 유형,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활용가능성 높음
 - “알리·테무에 칼 빼든 공정위…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본격화”¹⁾
- 소비자법제는 상대적으로 집행이 간편하므로 경쟁당국의 규제유인이 큼
 - 약관규제법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2. ‘거래현실 - 규제체계 간 괴리’ vs. ‘규제를 위한 프레임’?

○ 발표자의 입장 : 전자상거래법은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비판의 핵심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개념을 정하고 있는 정의조항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있음
- (9면) “현재는 4IR 커머스 시기이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체계를 보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정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10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정의조항은 (...) 시장환경은 물론 거래현실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
- (11면) “전자상거래법은 여전히 과거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방식의 일상화를 법체계에 반영하지 못함”
- (12면) “‘통신판매 중심의 규정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구조 내지 현실 반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12면) “‘통신판매 중개 등의 개념’을 토대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구조 내지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고민의 시작 : 과연 그러한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중심의 현행 법개념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큰 한계를 갖는가? 앞에서 정리한 집행사례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분류²⁾ : 매우 폭넓은 유형의 사업자를 포섭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제2조 제3호)
- 통신판매중개업자(제20조 제2항)
- 통신판매중개자(제20조 제1항)

1) 2024.7.1.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40701161004943>

2) 서중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별호, 2021, 40면.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제20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제20조의2 제3항)
-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 제20조의3)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제21조 제1항)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제9조의 2)
- 전자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제9조의2 제1항 제1호)

○ (私見) ‘전자상거래법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미가 확장된 법개념으로서의 ‘통신판매’?

- 2002년 제정시부터 ‘통신판매’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를 규정하여 일견 플랫폼 구조의 온라인 거래를 상정하고 있음
- 실제 집행사례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 내지 사이버몰 운영자로 포섭하여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현실문제를 꼭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도입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집행사례에서의 한계는 무엇인가?)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가 활발해진 현실 덕분에 과거 애매했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이 명확해진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 기존 법개념 체계를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법개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유형의 불분명성, 기존 법체계와의 비정합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³⁾ 법체계 차원의 혼란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충격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방향성에 관한 비판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넘어선 생성형 AI 사업자,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자 등의 경쟁법·소비자법적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법개념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일 수도 있음
- 입법론적인 논의에 앞서 해석론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생각의 전환] 중장기적 대안 : 소비자법의 경제법(經濟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 (현재) ‘전자상거래’, ‘상행위’ 등의 법개념으로 인해 상법과의 관계가 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규제, 공정거래법의 준용규정(법 제39조) 등으로 경제법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음
- (입법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는 경제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

3) 서중희, 같은 글, 58면.

- 경제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해석 또는 법개정⁴⁾을 통해 “기능적 해석론”⁵⁾에 따라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운영자’ 등의 법개념을 규제목적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법은 없는가?

3.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제 관련 문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2023.7.31.)

- 구성 : ‘목적 - 적용대상 - 기본원칙 -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의미 : 문제될 수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유형을 발굴하였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기반이 되었음
 - 한계 : 자율규약 내지 자율규제로 발전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자율규제의 성공조건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음
- * 자율규제의 성공조건⁶⁾ : (1) 산업계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확보, (2)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 (3) 객관적·구체적·공익적 기준의 수립, (4) 공정 절차 수립 및 대중의 참여 확대, (5) 규모의 경제가 통하는 참여자의 확보 등

○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자율규제와 규제공백?
- 자율규제와 규제강화?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공동규제 형태)
 - 공정위가 그동안 주도해온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는 모두 공동규제 형태임⁷⁾
 - 사업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소비자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적 관계 및 소비자법의 경제법으로의 의미에 관해서 유영국,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경쟁법연구 제41권, 2020, 173-174면.

5) 경제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법에서 규제목적에 맞는 개념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해석론 (funktionale Auslegungsmethode)은 경제법 영역의 고유의 해석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봉의,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2, 89면.

6) 백대용,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367-369면.

7)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2024.9.5. 보도자료.

【토론】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 미 영*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박미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라인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한 거래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꾸준히 개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규제하고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국 교수님께서 전자상거래법의 출발과 개정 연혁을 짚어주시면서 현행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 주셨고, 또한 최근 다크패턴 관련 개정 내용을 세세히 평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이 있었고 향후 입법정책에 충분히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한 추가 의견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영국 교수님께서서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문제를 동법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일부개정만이 이루어진 것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다크패턴 규제 도입뿐만 아니라,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 신설된 법 제9조의2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련의 규제를 보아도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환경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은 늘 사안별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해석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도 항상 있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 이슈 중 하나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판매대금 정산기일 법정화가 있습니다. 이 논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되었는데, 당시 티메프의 과도한 정산기한이 판매대금 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를 단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개정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입점업체 즉,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제도를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체계가 구성된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할 수 있는 법률이 전자상거래법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를 소비자와 유사하게 본다는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논의는 플랫폼 중심의 거래 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도 소비자 수준의 보호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한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전자상거래법 체계로 인해 정부는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한 중개거래에서의 판매대금 정산기일 법정화를 제안하였고,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법률안도 같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산기일을 법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법률안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 연결된 문제로, 교수님께서 개념에 의거하여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하시고, 뒤이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구성 방식에 대해 교수님께서서는 현재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재분류 선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교수님의 보충 설명을 청하고자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개정법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 분류가 규제의 본래 목적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함인데, 법률에 유형을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다크패턴 유형은 감추어지고, 해당 다크패턴 유형에 한정하여 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부족함이 있거나 교수님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사법상 효과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다크패턴은 그 종류와 양태가 다양하고, 온라인 마케팅과의 구별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피해 유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다크패턴을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 제재조치(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또는 민·형사상 책임은 분명하게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크패턴 규제 방식이 시장에서 효력을 가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예시와 기존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가능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유영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